

INSS 연구보고서 2020-5

2020 | INSS Research Report

한반도 평화 담론의 쟁점과 과제

김원식

INSS 연구보고서 2020-5

한반도 평화 담론의 쟁점과 과제 | 김원식

2020 | INSS Research Report

INSS 연구보고서 2020-5

한반도 평화 담론의 쟁점과 과제

김원식 kimphil@inss.re.kr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0 인스토피아 빌딩
Tel. 02-6191-1000 Fax.02-6191-1111 www.inss.re.kr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INSS
Research
Report

INSS 연구보고서 2020-5

한반도
평화 담론의
쟁점과 과제

김원식

한반도 평화 담론의 쟁점과 과제

김원식

김원식 (金元植)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철학박사. 주된 관심 분야는 북한 통치이념 및 평화, 인권 담론 등이다. 주요 저서로 『주체사상과 인간중심철학』(2003, 공저), 『배제, 무시, 물화』(2015), 『한반도의 분단, 평화, 통일 그리고 민족』(2019, 공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북한인권담론의 규범적 논거들에 대한 검토: UN의 개입에 관한 국내 시민사회 담론을 중심으로”(2006), “한반도 평화론의 모색: 민주평화론과 자본주의평화론의 대립을 넘어”(2007), “‘자주성의 역설’에 대한 성찰”(2016), “‘비판적 북한학’ 시론: 사회비판이론의 관점에서”(2017) 등이 있다.

목차

| | |
|------|---|
| 국문초록 | 6 |
|------|---|

| | |
|---------------|---|
| I. 연구 목적 및 범위 | 8 |
|---------------|---|

| | |
|---------------|----|
| II. 한반도 평화 개념 | 14 |
|---------------|----|

| | |
|-------------|----|
| 1. 평화 개념 일반 | 16 |
|-------------|----|

| | |
|--------------|----|
| 2. 한반도 평화 개념 | 22 |
|--------------|----|

| | |
|-------------------|----|
| III. 안보 담론과 평화 담론 | 26 |
|-------------------|----|

| | |
|--------------|----|
| 1. 안보를 통한 평화 | 28 |
|--------------|----|

| | |
|---------------------------|----|
| 2. 평화를 통한 안보: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 33 |
|---------------------------|----|

| | |
|------------------|----|
| IV. 인권 담론과 평화 담론 | 64 |
|------------------|----|

| | |
|-------------------------|----|
| 1. 인권을 통한 평화 담론의 의미와 한계 | 68 |
|-------------------------|----|

| | |
|-------------------------------------|----|
| 2. 평화를 통한 인권 담론의 필요성과 과제: 접근을 통한 변화 | 76 |
|-------------------------------------|----|

| | |
|-----------------|----|
| V.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 | 88 |
|-----------------|----|

| | |
|---------------------|----|
| 1.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의 대립 | 89 |
|---------------------|----|

| | |
|---------------------------------|-----|
| 2.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의 선순환: 과정으로서의 통일 | 102 |
|---------------------------------|-----|

| | |
|--------|-----|
| VI. 결론 | 108 |
|--------|-----|

| | |
|----------|-----|
| Abstract | 114 |
|----------|-----|

| | |
|------|-----|
| 참고문헌 | 118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 담론과 안보, 인권, 통일 담론의 관계를 검토하여 기존 평화 담론을 보다 정교화 하고 그 설득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햇볕정책 등장 이후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유화정책,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회피와 침묵, 통일을 포기한 분단관리론 등의 근본적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분단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한반도 질서 구축을 모색하는 한반도 평화 담론이 기존 질서, 기존 담론들과 충돌하는 과정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안보, 인권, 통일과 같은 가치들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인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반도 평화 담론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안보, 평화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기존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 안보, 인권, 통일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접근을 통한 변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표제하에 평화와 안보, 인권, 통일이라는 가치가 기존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선순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은 힘의 우위를 통한 안보라는 기

존의 발상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 상호협력을 통한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관계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접근을 통한 변화’는 기존의 인권 우선 담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통한 대북 접촉면 확대와 이를 통한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기존 통일론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남북 평화공존론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각각 검토한 후, 통일지향성 유지를 전제로 통일을 장기적인 과제로, 열린 과정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핵심어

한반도 평화, 안보, 인권, 통일

I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된 근본 쟁점들, 즉 평화와 안보, 인권, 통일 담론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평화 담론을 보다 정교화 하고 체계화 하는 데에 있다.¹ 한반도 평화는 6.25 전쟁의 참상을 겪은 우리에게 선택적 가치가 아닌 일종의 숙명적 과제이며 도덕적 책무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은 장기간 지속되어 고착되어 온 기존의 분단질서 타파와 신질서 구축을 요구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혁의 과정이기도 하다. 향후 한반도의 평화 구축 과정은 남한과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와 양자의 적대적 정체성 해소 및 새로운 우호적 정체성의 형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성격을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변경 등 다양한 차원과 수준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둘러싼 담론 내부에서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논쟁과 대결이 지속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장 이후 대북정책은 한국사회 진보-보수를 가르는 시금석 역할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 구축을 둘러싼 담론의 정치화 현상 역시 가속화 되어 왔다.²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근본 쟁점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향후에도 이는 불가피한

1 여기서 담론(discourse)은 언설 일반이 아니라 나름의 정당성 근거를 제시하는 언설 체계들로 규정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일방의 비판, 즉 근거제시 요구에 직면할 때 자연스럽게 담론의 층위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평화 관련 담론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의도나 권력적 성격에 대한 그림이나 푸코 식의 비판적 분석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는 평화 담론의 규범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넓히는데 주력하기 위한 의도임을 밝혀둔다. 담론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대한 분류와 관련하여서는 신진욱,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제89호(2011), pp. 11-2 참조.

2 한국사회 진보-보수 대립과 북한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권숙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남갈등의 이해」, 『사회과학연구』 제28집 1호(2012), p. 60 이하 참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은 남북관계 변화와 동북아 질서의 변화는 물론 평화를 구축할 정치적 주체와 담론 형성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 관련 근본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란 과연 어떤 평화를 의미하고, 그것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으며, 그 종착점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한반도에 구축하고자 하는 평화는 남과 북 사이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없는 두 국가의 평화로운 공존 상태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전쟁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폭력 자체가 사라진 어떤 이상적인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

둘째,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우리가 가진 힘의 우위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불가피한 남과 북 각각의 안보 취약성(vulnerability)을 수용하고 평화를 제도화 하려는 쌍방의 협력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인가?

셋째, 우리를 인도하는 최고의 가치는 평화인가 인권인가? 평화를 통해서만 북한의 인권 개선도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인권 개선이야말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근본 토대인가?

넷째, 한반도 평화의 최종 종착점은 남과 북 두 국가의 항구적 평화공존 상태인가, 아니면 하나의 국가 혹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의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가?

한반도 평화 구축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질서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근본적 문제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정책적 담론들이 제시되고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불가피한 동시에 그 자체

로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이러한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담론들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기 위한 상상력과 사고의 저수지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층위의 한반도 평화 관련 기존 담론들의 상충하는 근본 논점들을 점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 전반을 보다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햇볕정책 등장 이후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 제기된 근본적 비판들, 즉 안보를 포기한 유희정책, 북한인권에 대한 침묵, 통일을 포기한 분단 관리 정책이라는 비판들에 집중하여 평화와 안보, 인권, 통일 담론 관련 쟁점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핵심 목표로 우리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 구상 전반의 담론적 일관성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가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간 평화 담론들이 가지는 추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격으로 인해 한반도의 현실과 밀접하게 접촉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³ 한반도 분단과 대치 상황은 그 군사적 엄중성은 물론 국내적, 민족적, 국제정치적 차원이 병존하는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는 평화 담론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 담론 자체가 이러한 엄중성과 복합성을 내장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단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평화 개념이나 평화론을 제시하여 정리하거나 일면적이고 지엽적인 차원에서의 평화 구축 문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엄중하고 복합적인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범적 차

3 이러한 지적으로는 이남주, “분단체제 하에서의 평화 담론, 평화국가의 가능성과 경로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87호 (2013), p. 77 이하 참조.

원의 평화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것이 단지 규범적 차원에만 머물러서도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규범적 차원의 평화 논의를 안보, 인권, 통일 등과 같은 제반 핵심 가치들과의 연관 속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현재의 한반도 분단 현실에서 평화 규범을 실현하기 위한 동력과 원칙 등을 동시에 구체화 하는 일이다.

물론 평화 담론이 그 자체로 구체적인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러한 구체적 정책 차원의 고민들과 접속 가능한 것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엄중하고도 복합적인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출발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평화 담론만이 그 ‘구체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첫째, 한반도 평화 개념의 성격과 정의를 고찰한다. 여기서는 이후 논의를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평화 개념 일반 그리고 한반도 평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다. 둘째, 안보 담론과 평화 담론을 둘러싼 기존 논쟁들을 검토하고 안보 패러다임 전환에 입각한 평화와 안보의 선순환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북한인권 담론과 평화 담론을 둘러싼 기존의 논쟁들을 검토하고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표제 하에 평화 담론과 북한인권 담론을 매개한다. 넷째,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을 둘러싼 기존의 논쟁들을 검토하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표제 하에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을 매개한다.

평화, 안보, 인권, 통일은 모두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핵심 가치이며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규범들이다. 따라서 평화 담론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보, 인권, 통일이라는 가치를 배제하거나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적극적으로 포용해 낼 수 있어야만 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은 보다 안전한 삶, 더 많은 인권을 누리는

삶, 나아가서는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⁴ 한반도 평화 담론에 제기되어 온 비판들에 맞서 한반도 평화의 길이 안보, 인권, 통일이라는 가치를 포용해 낼 수 있을 때에만,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책도 보다 큰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평화, 안보, 인권이 그야말로 보편 가치인 반면에 통일은 분단국가인 한반도 상황에서 요구되는 특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통일이 평화, 안보, 인권과 같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가치 혹은 개념인지? 나아가서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추구해야만 하는 가치인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나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비록 장기적인 목표라고 하더라도 통일은 여전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한반도 상황에서는 통일이 평화, 안보, 인권에 버금가는 상위 가치로 설정되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

한반도 평화 개념

1. 평화 개념 일반
2. 한반도 평화 개념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담론들의 핵심 쟁점들, 즉 안보와 평화, 인권과 평화, 통일과 평화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검토하기에 앞서 평화 개념에 대한 일정한 정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평화 개념은 물론 안보, 인권, 통일 개념 역시 오랜 역사와 상이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의미 변화를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안보 개념만 보아도 전통적인 국가안보 개념에서 출발하여 공동안보, 포괄안보, 인간안보, 신안보 등의 영역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⁵ 또한, 인권 개념 역시 자유권에서 시작하여 사회권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발전권, 평화권 등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왔다.⁶ 물론 평화 개념 역시 이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의 변화와 개념의 정의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을 고려한다면, 평화 혹은 평화연구에 대해서 일의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맥락의 변화를 넘어서 평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문제 자체가 일정한 정치적 성격을 내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평화 개념에 대한 소극적 정의와 적극적 정의가 현존 사회질서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함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당시 냉전 질서 속의 동서 대립을 반영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도 현존 사회질서에 대한 상이한

5 민병원, “안보 담론과 국제정치, 안보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20권 2호 (2012) 참조.

6 미셸린 이샤이 저,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 (서울: 길, 2005) 참조.

정치적 태도를 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

아래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한계와 맥락들을 염두에 두되, 이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근본 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개념 설정이라는 목적에 집중하면서 평화 개념에 대한 나름의 정의 방식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1. 평화 개념 일반

평화는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미 주어진 어떤 상태를 지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의 실현을 추구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평화가 부재하고, 자유와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러한 개념들은 이미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명제는 그 형식에서는 사실 판단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여야만 한다는 당위 판단을 담고 있다.⁸ 평화 역시 주어진 어떤 상태를 지시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설립’해야 할 어떤 이념적 상태를 지시하는 규범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평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격을 고려해볼 때, 그에 대한 정의가 현존하는 전쟁과 폭력의 부재로부터 설명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자유 개념 역시 홉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를 저해하는 외적 요인의 부재 상태’로부터 출발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근대적 자유가 당면한 봉건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 규정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⁹ 그렇지만 이렇게 평화를 전쟁과 폭력의 부재 상태로 정의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해도 현존하는 전쟁이나 폭력의 양상 자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평화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는 손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문제되는 폭력이 첫째, 국내 단위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국제적인 단위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둘째, 폭력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징적이고 구조적인 폭력까지를 포함하는지에 따라서 평화 개념이 함축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폭력의 부재를 통해서만 평화를 정의하는 경우에는 당면한 폭력의 부재가 곧 평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폭력의 부재를 넘어 평화가 지향하는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인지, 또 평화를 추동하는 ‘동력’은 무엇인지 하는 지점들이 제대로 포착되고 논의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생각해 보자. 첫째, 군사력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당장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를 그 국가들 사이의 평화 상태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둘째,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없이 멀리 떨어진 두 국가가 상호 무관심 상태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굳이 이를 우리가 평화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7 자유 개념에 대한 논쟁이 가지는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는 이샤야 벌린 저, 박동천 역, 『자유론』 (서울: 아카넷, 2006) 중 자유의 두 개념 부분 참조.

8 허버트 마르쿠제 저, 김현일 역, 『이성과 혁명』 (서울: 중원문화, 2017) 참조.

9 근대적 자유 개념에 대해서는 김원식, “근대적 자유 개념의 재구성: 다차원적 사회비판의 이념을 위하여,” 『사회와 철학』 27호 (2014) 참조.

의미가 있을까? 셋째, 평화를 폭력의 부재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폭력의 부재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무엇이며 그것은 평화의 실질적인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평화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참조하고 ‘자유’의 두 개념’에 대한 이사야 벌린의 잘 알려진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화 개념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¹⁰ 먼저 평화의 범위는 국내와 국제 수준에서 구별될 수 있으며, 평화의 양태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나 전쟁 발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negative) 평화와 우호와 협력이 강화된 상태를 지시하는 적극적(positive) 평화로 구별할 수 있다.¹¹

먼저 소극적 평화를 단지 물리적 폭력이나 전쟁의 부재를 넘어 그 발생 가능성의 차원을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규정했던 홉스도 자연 상태에서 전쟁이 늘 지속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자 했을 뿐이다.¹² 임박한 전쟁 상황을 당장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에 따라 소극적 평화의 수준을 나누어 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적극적 평화 개념은 우호와 협력이 강화되어 평화 상태의 포

괄적인 토대와 내용이 구축되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 평화에 대한 이러한 정의 방식은 갈통(Johan Galtung)의 평화에 대한 초기 정의 방식과도 연결될 수 있다. 갈통 자신도 애초에 폭력과 전쟁의 부재를 소극적 평화로, 인간 사회의 통합(integration)을 적극적 평화로 규정한 바 있으며, 그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의사소통, 교역, 교육, 기술적 문화적 협력 등 다양한 차원의 우호, 협력의 문제들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¹³ 또한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 구성원들 사이의 우호와 협력이 강화되는 과정은 상징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의 일정한 감소와 제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의 정의 방식은 일정 부분 갈통의 적극적 평화 개념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초기의 정의와 달리 1969년 이후 갈통의 적극적 평화는 적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로 폭력의 부재를 통해 소극적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그러한 정의는 국가들 사이의 전쟁 문제에만 집중해온 기존 평화연구의 제한성을 넘어 평화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시도된 것이었다.¹⁴ 반면에 위에서 내가 제시한 개념 구별은 소극적-적극적 평화의 상호의존성과 평화 동력의 발굴 문제를 주로 염두에 둔 것임을 지적해 둔다.

10 이사야 벌린 저, 박동천 역, 『자유론』 (서울: 아카넷, 2006). 벌린은 소극적 자유를 외적 억압의 부재 상태로 규정하고, 적극적 자유를 진정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적극적 자기실현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대비시킨다. 이를 차용하여 나는 평화에 대한 위협의 부재 상태를 소극적 평화로, 평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우호와 협력관계가 구현된 상태를 적극적 평화로 정의하였다.

11 개인 심리 내부 차원의 평화도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이런 차원들은 논외로 처리한다.

12 토마스 홉스 저, 최공웅·최진원 역, 『리바이어던』 (서울: 동서문화사, 2009), p. 129 이하 참조.

13 Johan Galtung, An Editorial,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1. No. 1, 1964, pp. 1-4.

14 갈통의 구조적 폭력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및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는 Nils Petter Gleditsch, Jonas Nordkvelle and Havard Strand, “Peace Research - Just the Study of War?,”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1, No. 2, Anniversary Special Issue (March 2014), pp. 149-150 참조.

| | 국내 | 국제 |
|--------|---------------------|-------------------|
| 소극적 평화 | 폭력적 갈등 및 내전 가능성의 부재 | 전쟁 및 전쟁 가능성의 부재 |
| 적극적 평화 | 시민들 사이의 우호와 협력 | 국가(시민) 사이의 우호와 협력 |

국내 수준의 평화의 문제가 국가 단위의 자연 상태를 벗어나 시민적 정치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근대 정치철학의 주요 탐구 영역이었다면, 국제적인 수준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주로 국제정치학의 탐구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구별을 보면, 우선 언뜻 보기에는 국내 단위나 국제적인 단위 모두 소극적 평화 상태를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일차적인 과제인 것처럼 보인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충돌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이든 국가든 우호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국내적인 차원에서 보면, 직접적인 폭력적 갈등이나 내전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는 소극적 평화 상태가 무엇보다 먼저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러한 소극적 평화 상태가 수립되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그러한 소극적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우호와 협력, 즉 적극적 평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의 부정의 상태,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나 특정 소수자 집단들에 대한 무시와 혐오가 확산되는 사회에서는 내전과 혁명의 발생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은 소극적 평화 상태도 유지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무엇보다 먼저 시급하게 실현되어야 할

것은 직접적인 전쟁이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해소하는 것이겠지만, 적극적인 시민들의 평화 의지와 국가들 사이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우호와 협력이 없이는 이러한 소극적 평화 상태가 설립되고 유지될 수 없다. 설령 국가들 사이의 소극적 평화 상태가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들 사이에 엄청난 수준의 경제적 격차, 상호 적대감과 무시가 존재하는 경우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수준이든 국제 수준이든 일반적으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관계는 상호의존 관계, 선순환 관계로 볼 필요가 있다. 소극적 평화의 토대 위에서 적극적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적극적 평화의 구축을 통해서만 소극적 평화도 설립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극적 평화든 적극적 평화든 두 개념 모두 일종의 이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 국내 단위든 국제 단위든 폭력 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의 소극적 평화 수립 과정도 영원한 과제이며, 우호와 협력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평화 구축의 과정 역시 영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를 실현하는 과정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선순환 관계를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국가들 사이의 항구적 평화를 수립한다는 것도 일종의 영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동력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어야만 한다.¹⁵

한편,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대한 이러한 구별은 평화연구의

15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1795)는 이러한 시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바, 그는 공화정과 평화연맹, 상업의 정신 등을 통해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꿈꾸었다. 임마누엘 칸트 저, 이한구 역,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서울: 서광사, 1992) 참조.

영역 설정과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수준에서만 본다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소극적 평화에 관한 연구가 주로 기존 안보연구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평화의 동력 및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평화의 영역은 기존 안보연구와 일정 부분 구별되는 평화연구의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한반도 평화 개념

오늘날 한반도에서 평화 개념은 현재의 불안정한 분단과 정전체제를 넘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상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과 당위를 내포하고 있다.¹⁶ 한반도의 평화가 우연한 기회를 통해 그저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닌 이상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남북한 주민들의 소망과 의지야말로 한반도 평화 구축의 근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과 북은 군비경쟁을 지속하며 주기적으로 충돌 위기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대결 상태를 지속해 왔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을 시작으로 남과 북이 번갈아 가며 다양한 평화협정 제안들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북핵 문제 등장 이후에는 2005

년 9.19 공동성명이나 2018년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 구축의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연동되어 논의되어 왔다.

전쟁 위기가 반복되고 북핵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현 한반도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한반도 평화의 과제가 소극적 평화 상태의 수립, 즉 전쟁 발발 가능성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에서 여전히 의견이 서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사력과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만이 가능하다는 편에서는 여전히 첨단무기 도입,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도입과 같은 군비 확장을 통해 북한에 대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까지의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가는 것만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의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그리고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합의했던 문서들에 기초한다면,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과정은 군사적 힘의 대결을 넘어서 평화를 통한 평화를 구축하는 길,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 수립의 과정은 단순히 전쟁 가능성의 방지라는 소극적 평화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 평화의 길을 동반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갈통이 제시한 방

16 이러한 평화 개념은 한반도 수준에서 평화에 대한 내재초월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판적 평화학의 규범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식의 적극적 평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기존의 안보-평화 담론이 주로 군사 안보적 차원의 대결이라는 틀에 묶여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남과 북의 사회변화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적극적 평화 개념을 도입하여 평화 담론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⁷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갈통의 적극적 평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그 요구수준이 너무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당면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관한 정책적 담론 수준과 조응할 수 없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¹⁸

그렇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래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는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호와 협력의 축적 과정이 없이는 소극적 평화도 결국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간의 평화가 군사적인 안보 위협의 부재만을 상징하는 상호 무관심 상태로 규정되기 어렵고, 한반도 수준에서의 평화 개념이 남북관계의 발전 과정을 내포하고 지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호와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이 당면한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상 문제를 넘어서 거대한 역사적 전환 과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적극적 평화 개념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평화가 남과 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전쟁 발발 가능성의 부재라는 안보 차원의 평화 개념을 넘어 포괄

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의 한반도 평화 담론이 제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의 적대적 정체성의 해소와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강화, 나아가서는 남과 북 사회 내부 변화까지 모두 포괄하는 과정으로서의 한반도 평화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평화 담론의 틀 속에서만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과정은 한미동맹 변화나 유엔사의 지위 변경, 남북 군축과 같은 안보관련 사안들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통일 문제 등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수많은 정치적 논란과 대결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이 가진 외교적, 경제적, 정치사회적 취약성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 상황, 남북 간의 엄청난 경제적 격차, 폐쇄적인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적극적 토대들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남과 북의 우호와 협력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평화의 토대가 구축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원하는 남과 북의 소극적 평화 구축 역시 비로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선순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 과정은 전쟁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은 물론 반드시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되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어지는 장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개진될 수 있을 것이다.

17 구갑우,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시민과 세계』 10호 (2007), p. 44 참조.

18 이상근,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와 실현조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연구보고서 18-11, p. 23 참조.

III

안보 담론과 평화 담론

1. 안보를 통한 평화
2. 평화를 통한 안보: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분단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남과 북은 적대적 이념에 입각한 체제대결을 지속하여 왔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튼튼한 안보는 군사력의 우위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안보 담론’이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냉전해체와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계기로 이러한 기존 안보 담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 하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남과 북의 평화와 안보를 이해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해보고자 하는 ‘평화 담론’도 활성화되기 시작한다.¹⁹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안보와 평화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고민들이 이러한 담론들의 변화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안보를 통한 평화’라는 표제 하에 우리사회 내부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존 안보 담론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안보 담론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이러한 기존 안보 담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간략히 다루어진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기존 안보 담론에 대항하여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평화 담론 모델들을 검토하고,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9 서보혁, “한국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2호, 통권 89호 (2015), p. 122 이하 참조.

1. 안보를 통한 평화

구한말 대한제국의 몰락과 일제의 식민 침탈, 6.25 전쟁과 이후 남북 적대관계의 지속에 대한 경험은 공동체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을 때 겪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을 우리로 하여금 절절히 체감하게 하였다. 때문에 힘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할 때에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은 지금도 여전히 안보와 평화를 생각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보를 통한 평화라는 이러한 체화된 인식의 틀은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이론을 통해서 이론적인 근거도 강화해 왔다. 현실주의 이론은 군사력을 중심으로 하는 힘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만 개별 국가들의 안보가 확보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 냉전체제가 전 세계를 양분하고 두 진영 사이의 힘의 대결이 심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안보문제는 모든 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미소 초강대국 사이의 힘의 대결과 핵무기의 등장으로 모든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현실주의적 전략 수립에 매진하게 된다.²⁰

현실주의 이론은 무정부 상태의 국제질서 속에서 각 국가들은 ‘두려움(fear), 자조(self help), 그리고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취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국가 간 국력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힘의 우위를, 가능한 경우에는 패권국의 지위를 추구하게 된다고 한

다.²¹ 국가 상위의 그 어떤 권위제도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가들은 스스로 군사력을 키워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할 수 없고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부족한 국가들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체결하여 힘의 우위와 안전 보장을 도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관계를 무정부 상태 하의 힘의 대결로 규정하는 인식의 틀은 토마스 홉스(1588-1679)의 자연 상태 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홉스는 근대 시민사회 성립 이전의 사회 상태를 ‘자연 상태’로 명명하였으며, 그 핵심 특징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규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정부 상태로서의 자연 상태 개념을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 관계 차원에 적용하면서 국제 관계의 근본 성격을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였다. 개별 국가들 상위의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정부 상태인 국제 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침략에 대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력으로 혹은 동맹을 통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여 스스로의 안보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주의적 안보 담론은 첫째, 힘의 우위를 통해서 근본적인 안보 취약성을 제거할 수 없으며, 둘째, 불가피하게 안보 딜레마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셋째, 그것이 전제하는 존재론적-인식론적 전제들이 매우 협소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무정부 상태 하에서는 상대적인 힘의 우위를 차지하더라도 근본

20 민병원, “안보 담론과 국제정치, 안보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p. 210 이하 참조.

21 존 미어샤이어 저, 이준근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나남, 2004), pp. 89-92.

적인 안보 취약성(vulnerability)이 결코 제거될 수가 없다. 홉스가 말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성립하는 근본 이유는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갑자기 살해될 수 있다는 ‘취약성에서의 평등’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정부 상태가 존속하는 한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안보 취약성이 결코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개인의 경우와 달리 국가는 안보 위협에 대한 집단적 대처가 가능하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국가 자체가 사라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에 직면하는 안보 취약성과 국가의 경우는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9.11 테러나 북핵 문제에서 이미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이러한 안보 취약성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 현실이다.²² 상대적인 군사력, 즉 힘의 우위를 통한 개별 국가들의 안보 증진이라는 구상은 개별 국가들이 지닌 힘의 우위로 상쇄할 수 없는 근본적인 안보 취약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군사력을 통한 안보 증진 방안은 그것이 설령 방어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변국의 위협 인식을 강화하여 결국 군비 경쟁만을 가속화하게 되는 소위 ‘안보 딜레마’ 상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안보 추구를 통해 안보나 평화가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 추구를 통해 안보와 평화가 위협받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실주의 안보 패러다임은 국가를 고립된 거대 ‘주체’로 상정하고,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도구적 합리성’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존재론

적-인식론적 협소성을 노정하고 있다. 현실주의의 국제관계 인식 틀은 홉스의 개인 개념을 국가 단위의 거대 주체로 확대하면서 이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홉스는 근대적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절연된 고립된 주체로 상정함에 따라 타자와의 관계를 도구적, 전략적 합리성의 틀 속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주체-객체 틀이 국가를 고립된 거대 주체로 상정하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도구적, 전략적 경쟁의 틀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주의 이론 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립된 개인을 모델로 ‘주체-객체’ 틀 속에서 모든 것을 도구화 하는 근대적 주체 철학, 의식 철학에 대한 현대적 비판에 비추어 보면²³, 이러한 접근 방식은 타자를 도구화 하는 전형적인 근대적 인식 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론적-인식론적 패러다임을 전제하는 경우 국제적 무정부 상태와 각국의 안보 추구를 위한 무한 경쟁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일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도입이 불가피한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말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힘을 통한 안보라는 현실주의적 인식은 남북관계의 역사 속에도 그대로 구현되어 왔으며, 그러한 안보 담론이 가지는 한계 역시 현재 한반도 상황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복 이후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은 이미 두 진영 사이의 국제적 힘의 대결이었으며, 전후 북진 통일과 적화통일을 위한 남북의 군비경쟁 역시 이념을 명분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힘의 대결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안보와 평화 역시 군사적 힘의 우위를 통한 안보와 안보를 통한

22 Hedley Bull, “Hobbes and the International Anarchy,” *Social Research*, Vol. 48, No. 4, Politics: The Work of Hans Morgenthau (winter 1981), p. 735.

23 M. 호르크하이머 저, 박구용 역, 『도구적 이성 비판』 (서울: 문예출판사, 2006).

평화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계적인 냉전 종식 국면에서 노태우 정부 시기 선구적인 ‘북방정책’이 시도되어 ‘남북기본합의서(1991)’가 체결되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기에는 시장의 상호의존성 확대를 통해 평화를 모색하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시도들은 북핵 문제의 압초에 걸려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으며, 최근 2018년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적극적 노력이 경주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북미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남과 북 사이에는 여전히 각자가 직면한 안보 취약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과 북의 힘의 대결이 지속되면서 남북 사이의 안보 딜레마는 지속되어 왔고 최근에도 북한의 핵과 ICBM 개발, 남한의 첨단무기 도입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되어 가면서 남한은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심각한 안보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북한 역시 남한의 국력 우위, 외교적 고립, 폐쇄적 정치사회 체제 등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여전히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현실주의적 힘의 대결을 통해 적을 제압하고자 하는 협소한 인식과 담론의 틀에 포획되어 있는 상황이다.

남과 북 사이의 체제경쟁이 냉전종식 이후 남한의 국력 우위 상황으로 귀결되었지만, 여전히 북핵으로 인한 우리의 안보 취약성도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인식에서 일부 변화가 있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적대적 상호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화를 통한 안보 담론의 모색은 안보를 통한 평화 담론이 봉착해 있는 이러한 이론

적, 실천적 문제 상황에 응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화를 통한 안보: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우리 사회 내부에서 힘의 우위를 통한 안보와 안보를 통한 평화라는 기존 안보 담론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평화를 통한 안보’ 담론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냉전체제의 해체와 한국사회의 민주화, 적대적 남북관계의 전환 등이 그 배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요구와 냉전 해체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북방정책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남과 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동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은 물론 군비통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적대적 대결에 기초한 기존의 안보 담론을 남과 북의 협력과 평화를 통한 안보 증진이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핵 문제 부상으로 남북관계의 우여곡절이 반복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도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을 계기로 남과 북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모색하는 평화 담론이 우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또한 2017년 위기 이후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평화를 통한 안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평화 담론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기존 안보 담론이 만들어 낸 안보와 평화의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간 제안된 평화를 통한 안보 담론들을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방안을 새롭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힘을 통

한 안보, 안보를 통한 평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현실주의 안보 담론은 우리에게 익숙한 특이한 이분법, 즉 안보냐 평화냐 하는 이분법적 선택 구도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이러한 이분법이 특이하다고 보는 이유는 기존 안보 패러다임 하에서는 힘의 우위를 통해 안보를 확보하는 방식 이외의 평화 구상은 언제나 ‘유화정책’이나 ‘패배주의’로 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²⁴ 사실 이러한 이분법을 전제로 한다면 안보냐 평화냐 하는 선택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는 안보를 우선시해야만 한다는 것이 언제나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심대한 안보 위협이 존속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과 안전과 안보에 대한 요구가 개인과 공동체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요구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이분법 하에서는 안보를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다른 선택지는 불가능한 셈이다.

따라서 평화를 통한 안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특이한 안보-평화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사실 안보냐 평화냐 하는 기존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논리적인 선택지는 다음과 같은 3가지뿐이다.²⁵ 첫째, 안보중심으로 기울어진 기존의 이분법을 평화중심으로 대체하는 전략, 즉 안보 담론을 평화 담론으로 대체하는 전략이다. 둘째, 안보와 평화의 기존 이분법을 깨뜨리고 안보와 평

화를 동일화 하는 전략이다. 안보가 곧 평화가 될 수 있다면, 기존의 안보와 평화의 이분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안보와 평화의 독자적 차원을 각각 인정하는 동시에 안보와 평화의 공통분모를 강조하면서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을 시도하는 전략이다.

물론 안보와 평화의 기존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해 제시되어 온 대안적 담론들이 위에서 구별한 논리적 선택지를 늘 의식적으로 고려하면서 제시되지 않았던 만큼 각각의 논의들에 이러한 선택지들이 혼재되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쩌면 위에서의 구별은 일종의 이상형(ideal type)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제한성을 염두에 두면서 아래에서는 기존 안보 담론에 대해 제시된 대안적 평화 담론들을 먼저 위의 첫째, 둘째 선택지로 나누어서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담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서술의 순서는 안보 담론을 평화 담론으로 대체하는 첫 번째 선택지나 안보 담론과 평화 담론을 동일화 하는 두 번째 선택지에 모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가. 평화 담론을 통한 안보 담론의 대체: 평화국가론

평화 담론을 통해서 기존의 현실주의 안보 담론을 대체하려는 시도로는 2006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제안된 ‘평화국가론’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²⁶ 평화국가론은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전쟁,

24 그간의 비핵화외교와 관련하여 이러한 평가를 제시하는 사례로는 전성훈, “비핵화외교의 실패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전략연구』 제26권 2호, 통권 제78호 (2019), p. 218 참조. 그는 “우리의 자체 핵 옵션 행사가 평화를 깨고 전쟁을 부른다는 주장은 히틀러에 속은 챔벌레인의 유화정책과 다를 바 없고 국민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패배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25 순수 논리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안보-평화 이분법의 해체(deconstruction) 전략, 즉 안보와 평화의 구별 가능성 자체를 해소하는 전략도 가능하겠지만 기존 담론 속에서 이러한 접근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실천적 결론이 명확하게 제시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접근은 논외로 한다.

2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06년 8월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이제 ‘평화국가’를 이야기하자: 평화국가 구상과 시민사회운동”에서 평화국가론을 제안하였음.

2차 북핵 위기 등을 배경으로 시민사회 차원에서 제안된 새로운 한반도 평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국가론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시민사회 담론과 결합하여 새로운 국가, 평화국가를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선군축'과 이에 기초한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동아시아 평화네트워크 건설을 통한 지구적 차원의 평화 국가 연합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제안은 힘의 우위를 통한 국가안보라는 전통적 안보 담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 공동안보나 인간안보와 같은 안보 개념의 전환과 확장 등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동안보(Common Security)개념은 1980년대의 냉전 상황 속에서 핵무기로 인한 공멸위기가 확대되면서 신뢰구축이나 안보적 투명성 증대와 같은 상호협력을 통해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안보 개념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기아나 실업과 같은 제3세계 문제에 주목하면서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지향하는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²⁸ 인간안보(Human Security)개념은 1994년 UN 개발프로그램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으로 전쟁 위협을 넘어 각각의 개인들이 직면한 빈곤, 저개발, 질병과 같은 문제의 차원들로 기존 안보 개념을 확장하였다. 여기에는 경제, 식량, 보건, 환경, 개인, 공동체 그리고 정치적 안보라는 일곱 가지의 영역이 대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

다.²⁹

평화국가론은 이러한 안보 개념의 전환 추세에 기초하여 한반도에서도 남과 북이 힘의 우위가 아니라 상호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화국가론은 한반도 평화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기존의 국가안보를 넘어서 각각의 개인들이 직면한 다차원적인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과정, 즉 인간안보를 증진하는 과정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³⁰

평화국가론의 이러한 주장은 남북 사이의 힘의 우위 관계에서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980년대 말 이후 남북한 사이에는 남한의 전쟁수행 능력 우위 대 북한의 억지력(대량살상 무기 개발 및 배치) 우위라는 비대칭적 군사력 균형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¹ 남한의 군사력 우위에 대한 이러한 판단 하에서 평화국가론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국방비 증액 시도가 동북아에서 냉전시대와 같은 안보 딜레마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³²

이러한 판단들을 전제로 안보 담론을 평화 담론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면서, 평화국가론은 북한에 대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남한이 먼저 나서서 시민사회 주도 하에 국가정체성 자체를 안보국가에서 평화국가로 변화시켜 나가야함을 역설하였다.³³ 힘의 우위를 가진 남한이 선제

27 구갑우, “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평화·안보 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3호, 통권 62호 (2008), p. 109.

28 신범식, “다자 안보 협력 체제의 이해: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과 현실,” 『국제관계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 제28호 (2010), p. 11 이하 참조.

29 민병원, “안보 담론과 국제정치: 안보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p. 219 참조.

30 구갑우,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P. 43.

31 Ibid., p. 27.

32 Ibid., p. 36.

33 Ibid., p. 44.

적으로 평화국가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남과 북 사이의 적대적 정체성 해소와 우호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평화국가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북한은 물론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정체성 변화를 촉진하고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남한이 먼저 선제적 군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평화국가론은 남한의 평화국가화를 위한 동력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하였으며, 이는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 요구로 이어진다. 국가관료 중심의 안보 영역을 시민참여를 통해 개방화하고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³⁴

평화국가론은 기존의 대결적 안보 담론의 한계에 대한 비판, 남과 북의 협력을 통한 안보 증진의 필요성, 안보 개념의 확장 필요성 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성찰 내용들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상의 실현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 나아가서는 동북아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한 한국사회 내부의 양극화 해소와 같은 정치경제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도 지적해주었다.

그러나 기존 안보 담론의 주도적인 영향력, 안보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안보 담론을 평화 담론으로 대체한다는 전략은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서 일정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³⁵ 북핵 위협이 상존하고 아직까지 남과 북의 적대적 정체

성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안보가 인간의 기본 욕구이자 공동체의 제1과제라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 안보 담론을 평화 담론으로 대체하면서 일방적인 선군축을 제안하는 것은 폭넓은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고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평화 담론으로의 대체 전략은 기존의 안보-평화 이분법 틀 속에서 유화정책이나 패배주의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평화 담론과 안보 담론의 동일화: 안보평화론

평화 담론과 안보 담론을 동일화 하려는 시도는 기존의 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 즉 대결적 안보(security against) 담론을 협력적 안보(security with) 담론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다. 힘의 우위를 지향하는 기존의 대결적 안보 담론을 넘어서 상호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처한다는 새로운 발상에 기초한다면, 공동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과정은 곧 평화를 수립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 위협의 부재 상태가 곧 평화를 의미한다면, 평화란 상호협력을 통해 안보 위협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하여 안보와 평화를 동일화 하는 전략은 각각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에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구별은 안보와 평화의 개념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첫째, 포괄안보, 인간안보 개념으로 안보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현 추세를

34 구갑우, “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평화·안보 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p. 112.

35 이러한 지적으로는 유재건, 「남한의 평화국가 만들기는 가능한 의제인가」, 창비주간논평 (206. 8. 22) 참조.

수용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의 수준을 빈곤 극복, 인권 보장, 생태 지향 까지 포함하는 높은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둘째, 이와 달리 군사 갈등의 예방 및 관리라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 수준에서 낮은 수준의 안보와 평화의 동일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1) 높은 수준의 안보평화 동일화

전통적인 안보 담론은 국가중심의 군사력 경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 경우 안보 위협은 주로 적대국가의 군사력을 통한 위협, 즉 전쟁 위협으로 정의되어 왔다. 반면에 포괄안보나 인간안보의 개념은 국가 단위의 전쟁 위협을 넘어 개인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의 복합적 안보 위협으로 그 관심의 영역을 넓혀왔다. 이는 평화연구에서 평화 개념이 전쟁 위협의 부재라는 소극적 평화 개념에서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제거까지 요구하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온 과정과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보 개념을 이와 같이 포괄안보, 인간안보 개념으로 까지 확장하게 되면, 안보 개념은 결국 갈통이 제시한 적극적 평화 개념과 수렴하게 될 것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개인에 대한 안보 위협이란 결국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 전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안보 개념의 수준을 높게 설정하면 결국 안보 개념과 평화 개념 나아가서는 정의(Justice) 개념도 결국은 한 지점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 차원의 안보 위협을 넘어서 개인의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게 되면, 안보와 평화는 결국 개인들 사이의 ‘동등한 참여(parity of participation)’를 보장하는 정의와 구별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³⁶

예를 들어 구조적 부정의와 소수자 정체성 문제에 주목했던 아이리스 영의 경우 사회적 부정의를 지배(domination)와 억압(oppression)으로 구별한바 있다.³⁷ 여기서 지배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억압은 다시 착취, 주변화, 무력화,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구별된다. 이러한 사회정의 개념은 실상 인간안보나 적극적 평화 개념에서 이야기 하는 개인에 대한 안보 위협 혹은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모든 층위를 포괄하는 것이다. 때문에 안보나 평화 개념의 수준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결국 높은 수준의 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과 구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안보와 평화 개념을 설정하고 양자를 동일화 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 역시 단순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방지를 넘어 정치, 경제, 문화 등 복합적인 차원의 안보 위협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 즉 사회적 부정의 전반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안보나 평화 개념은 사회정의 실현과 관련하여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를 급진화 하고자 하는 요구와 잘 접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안보나 적극적 평화 개념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발전 단계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사회 진보 진영의 담론과 친화성을 갖고 수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을 기존의

36 정의를 동등한 참여로 규정한 사례로는 낸시 프레이저 저, 김원식 역, 『지구화 시대의 정의』(서울: 그린비, 2011), p. 105 이하 참조. 그녀는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정의가 가지는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37 이에 대해서는 아이리스 매리언 영 저, 김도균·조국 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서울: 모티브북, 2017) 참조.

국가중심 안보 담론을 넘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시민의 민주적 참여와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과정과 적극적으로 결부시켜 고민해 나가고자 하기 때문이다.³⁸

그런데 문제는 남북한 사이의 민주주의 및 사회발전 수준에서의 현격한 격차를 고려할 때,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안보와 평화 개념을 동일화 하는 것은 결국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남한 사회 진보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서 인간안보나 적극적 평화 개념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양극화 극복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나 시민참여를 통한 안보 영역의 민주화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 과제로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여전히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그리고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와 평화 개념의 높은 수준의 동일화를 전제로 북한과의 관계에 접근할 경우 이는 곧바로 북한정권이 수용하기 어려운 북한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북한인권의 근본적 개선을 지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안보나 평화 개념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보장이라는 인권 증진을 그 핵심 목표로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인간안보나 적극적 평화 개념이 사회정의와 수렴될 수밖에 없다면, 높은 수준의 사회

정의가 그것의 조건으로서 인권 증진을 포함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실제로도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기준 설정 하에 북한의 인권 개선이나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반도 평화는 무의미한 만큼 북한체제의 민주화 이후에나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³⁹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과정을 적극적 평화 실현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제거를 위해 억압적인 북한체제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높은 수준에서 안보와 평화를 동일화 하는 담론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 발전 기획으로서 그것이 가지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의 이질성과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남북 사이의 평화 구축 과정과 관련하여 직접 적용되기에는 많은 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낮은 수준의 안보평화 동일화

협력적 안보라는 새로운 발상에 입각하되 한반도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능한 수준의 안보와 평화를 군사적 충돌의 예방과 관리라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남과 북 사이의 협력을 통한 안보 위협 해소를 통해서 평화를 수립한다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수용하면서도 현실화 가능한 수준에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보나 평화의 요구 수준을 높이는 경우에는

38 윤홍식, “반공개발국가를 넘어서 평화복지국가로: 역사와 전망,” 『시민과 세계』 27 (2015) 참조.

39 정경환·신왕철,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2권 4호 (2012). 저자들은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결코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은 어렵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북한체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변화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한 남북의 협력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북한인권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북한체제 자체의 민주화(민주평화론),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전면적 수용(시장평화론) 등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남과 북의 안보 협력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상적 접근을 넘어서 현재 한반도에서 가능한 수준의 평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당면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한반도 평화는 “안보 딜레마와 군사적 갈등이 방지되는 갈등관리 차원의 잠정적이고 낮은 단계의 제도화”라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방식의 낮은 수준의 안보와 평화의 동일화를 지향하는 접근들은 주로 당면하여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의미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 하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일종의 ‘안보 레짐’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⁴¹

전쟁 발발 가능성의 부재를 평화로 정의하는 이러한 안보-평화의 동일화 시도들이 가지는 장점은 위의 높은 수준의 안보와 평화 개념의 동일화 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의 근본적 변화 요구, 즉 민주화나 북한인권 개선 등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과 북 사이에 당면한 군사적 안보 위협 제거를

위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이라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협상 가능한 문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안보와 평화를 등치시키는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주로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 정부 차원의 협상이나 협정체결이라는 문제로 환원되면서 평화 문제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여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남북 교류와 협력 및 이를 통한 상호정체성의 변화 과정, 평화 수립 과정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 사회 내부에 요구되는 정치적, 사회적 변동 등의 차원이 한반도 평화 관련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나 안보 개념 자체가 전쟁 발발 가능성의 방지라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축소되면서, 평화 구축 과정에서 평화운동이나 평화교육, 평화문화 등이 가지는 고유한 역할들이 조명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 논의가 정부 차원의 협상 과제로 축소되는 경우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와 담론 형성의 문제들은 논의에서 주변화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평화와 안보의 선순환 담론

안보나 평화나의 기존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세 번째 담론 전략은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을 지향한다. 이러한 선순환 담론 역시 힘의 대결이 아닌 상호협력을 통해서 당면한 안보 위협과 각자의 안보 취약성을

40 황지환, “한반도평화체제 구상의 이론과 현실,” 『평화연구』 제17권 1호 (2009), p. 129 참조.

41 이상근,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와 실현조건』, p. 23 참조.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곧 평화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을 앞서 살펴본 평화 담론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선순환 담론은 기존 이분법을 전제하고 안보 담론을 평화 담론으로 대체하거나 안보와 평화 개념을 동일화 하는 위에서 검토한 담론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

첫째, 선순환 담론은 기존 이분법을 유지하면서 안보 담론을 평화 담론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안보 담론과 평화 담론의 공통성과 접점을 강조한다. 안보 취약성 해소를 위한 협력이라는 공통성을 기초로 해서 안보와 평화의 길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의 안보취약성 해소를 위한 이러한 협력에서 작동하는 논리는 선제적 양보의 논리가 아니라 '호혜성(reciprocity)의 논리'가 되어야만 한다.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여전히 현실주의 안보 담론이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담론을 평화 담론으로 대체한다는 논리는 유화정책이나 패배주의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남한의 선군축이나 평화국가로의 정체성 변화와 같은 일방적 양보의 논리는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선순환 담론은 남과 북이 각각 직면하고 있는 비대칭적인 안보 위협을 협력을 통해 호혜적으로 완화-해소해 나가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안보 취약성 해소를 위해 남과 북의 신뢰와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보 위협이 완화됨으로써 다시 평화의 토대가 공고해지는 평화와 안보의 선순환 과정이 작동되어야만 한다.

둘째, 선순환 담론은 안보와 평화 각각의 독자적 영역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안보와 평화를 동일화 하는 담론과 구별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보와 평화를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에서 동일화 하는 전

략은 각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선순환 담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안보와 평화의 동일화 담론들과 구별될 수 있다.

먼저 낮은 수준의 안보평화 동일화 담론은 전쟁 방지라는 차원으로 평화의 문제를 축소시키는 데 반하여, 선순환 담론은 전쟁 방지의 소극적 차원을 넘어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적극적 평화 구축 차원을 고유의 평화 담론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순환 담론은 정부 차원의 협상을 넘어 평화 구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선순환 담론은 높은 수준의 안보-평화 동일화 담론과 달리 남과 북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 수준에서의 현저한 격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점진적인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과정을 모색하고자 한다. 물론 이는 선순환 담론이 인간안보나 적극적 평화의 이념 자체를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단지 이러한 이념을 남북관계 속에서 실현하는 데에서는 점진적인 접근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할 뿐이다.

그러면 이제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담론이 어떤 이유에서 현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어떤 구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왜 현재 평화 담론으로의 대체가 아닌 호혜성 논리에 입각한 평화와 안보의 선순환 논리가 필요한 것인가?

미소 냉전 상황 속에서 남과 북 사이에 팽팽하게 유지되던 체제경쟁과 적대관계는 냉전해체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국력 우위 상황으로 급변하게 되었다. 첫째, 외교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북방정책 기조 하에 소련(1990), 중국(1992)과 수교관계를 맺은 반면 북미관계, 북

일관계 정상화 과정이 지연되면서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취약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둘째,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나간 반면에, 사회주의권 붕괴와 더불어 북한 경제는 90년대 중반 거의 붕괴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기초로 한 국방비 지출 확대로 군현대화 및 첨단무기 체계 도입에서 큰 성과를 올려온 반면에, 북한의 경제 붕괴는 첨단무기 체계의 개발이나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북한은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서도 난관을 겪게 된다. 넷째, 자본, 노동, 정보의 초국경적 흐름이 가속화 되는 지구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체제로의 변화를 가속화 해온 반면에, 북한은 폐쇄적 정치사회체제를 고수하면서 외부 세계와의 개방적 관계 형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정치사회적 취약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북한은 90년대 이후 핵과 미사일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이후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교환을 화두로 몇 차례의 협상이 시도되었지만, 4자회담, 6자회담 등의 시도들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면서, 결국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핵과 ICBM 개발을 가속화 하였다. 북한은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마침내 2017년 말에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후 2018년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맞교환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는 성과를 얻었으나 2019년 초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북핵문제 해결은 장기교착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재 남과 북은 여전히 양자 사이의 비대칭적인 안보 위협

과 취약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서 비대칭적이라 함은 첫째, 남과 북이 직면한 안보 위협이 서로 다른 층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서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한의 안보 위협이 주로 북한의 핵무기라는 군사적 층위에 존재하는 반면에, 북한이 처한 안보 위협은 군사적 차원과 더불어 외교적, 경제적, 정치사회적 층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현재 남한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으로는 완벽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위협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그간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 역시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에너지 지원, 평화협정 등 복합적인 사안들이 연동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북핵 위협이 심화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첫걸음은 안보-안보 교환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보유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남한의 국력 우위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여 남북 경제의 상호의존성 확대를 통한 기능주의적 접근, 점진적인 교류 확대를 통한 적대적 정체성 해소 등의 경로를 통해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선제적인 양보의 논리에 입각한 선군축이나 선제적인 평화국가 정체성의 확립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되고 비대칭적인 안보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선제적인 양보의 논리는 정당성과 설득력 확보에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담론은 현재 상황에서는 선제적 양보가

아닌 호혜성 원리에 입각하여 남과 북의 상호협력을 통해 서로의 안보 취약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힘의 우위를 통해 근본적인 안보 취약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남과 북이 직면한 안보 취약성 해소를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한 안보 취약성 해소의 노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정권이나 북한체제에 대한 도덕적, 규범적 판단에 앞서 북한이 처한 안보 위협을 있는 그대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이 우리의 안보를 더욱더 튼튼히 하는 길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안보 취약성을 해소해 나가는 길이라는 점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남과 북이 처한 안보 위협이 비대칭적이라는 점에서 남과 북의 협력이 형식적인 1:1 교환의 논리, 등가교환의 논리에 속박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협력과 평화 구축 과정이 호혜성 논리에 입각하여 점진적으로 안보와 평화를 동시에 증진하는 선순환 과정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둘째,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은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점진적인 접근을 강조하는가?

오랜 분단과 적대적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 사이의 이질성과 적대감이 확대재생산 되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로 인해 남북한 사이의 이질성을 넘어서 사회정치적 발전 수준에서의 격차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이다. 남한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다양성과 권리 보장 수준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으

며 개인의 인권 보장도 다양한 방식으로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왔다. 반면에 북한은 수령중심의 폐쇄적 집단주의 체제가 고착화 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나 개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는 물론 역사적 경험 역시 축적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한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극적 평화나 인간안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규범적 요구를 한반도 평화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이는 결국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나 민주화를 한반도 평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한반도 평화의 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는 결국 한반도 평화보다는 남북 사이의 적대적 대결을 강화하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현 상황에서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각각이 직면한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해 협력해 나가면서 신뢰를 축적하는 데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전쟁 방지나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한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인권이나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제거 과정으로서의 사회정의와 같은 가치들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이 남과 북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적 삶의 토대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평화가 과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남과 북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토대이며, 이러한 평화 구축 과정의 진전이 결국은 남북한 사회 내부의 사회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만은 분명한 사

실이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권리의 증진은 단순히 평화의 부수효과로 저절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칙과 원칙 적용의 신중함은 구별되어야 하지만, 인권이 인권으로 명명되는 한 그것은 여타의 실용적 목적을 위해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선순환 담론은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안보 증진 과정인 동시에 인권과 정의의 신중하고 점진적인 실현 과정이 될 것을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전쟁 발발 가능성의 완화와 해소를 위한 협력에서 출발되겠지만, 이는 동시에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과정이 되어야만 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북한 사회 내부는 물론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변화의 요구들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안보, 적극적 평화, 인권과 같은 가치들은 이러한 변화의 지향점이자 원칙이 되어야만 하며, 한반도의 점진적 평화 구축의 과정은 현실적 상황과 한계를 신중하게 인식하면서도 반드시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과 병행되어야만 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과정이 민주주의의 확대와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국가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어야만 한다면, 이는 동시에 점진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사회의 민주화 프로젝트를 함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지탱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결국 남북한 시민들의 평화 의지가 민주적으로 대표됨으로써만 확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왜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담론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하는가?

선순환 담론은 안보와 평화를 동일시하는 입장과는 달리 안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적극적 평화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개념적으로 볼 때, 앞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는 안보 위협의 부재로서의 소극적 평화 상태를 초과한다. 만일 안보 위협의 부재가 곧 평화라면, 남과 북의 평화는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상호 무관심한 어떤 상태를 지시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이미 우호와 협력이 축적되어 나가는 과정을 적극적 평화의 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적극적 평화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누구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분단체제의 극복 나아가서는 동북아 지역의 세력 대결 구도를 타파하는 역사적 변화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정부가 평화 구축 과정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변화 의지의 궁극적 토대와 주체는 결국 국민들의 평화 의지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동북아 차원의 세력 대결 구도를 해체하는 데에서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분단과 대결의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궁극적 토대가 시민들의 의지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의 안보 담론을 넘어 평화를 통한 안보의 길을 위한 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궁극적 주체는 우리 시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순환 담론은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남한 내부에서 민주주의적 정치에너지가 분출되었을 때,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과 10.4 선언, 그리고 2018년도의 남북관계 전환 국면이 전개되었다는 경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는 그 누구에 의해 주어질 수 있는

선물이 결코 아니며, 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근본 동력은 남한 시민들의 의지일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 자체가 부재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만큼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안보 위협 해소를 넘어서 남과 북이 안보 영역 이외에서도 협력과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남과 북 정부 차원의 안보 위협 해소 과정을 통해서도 남과 북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나가겠지만, 남과 북의 적대적 정체성을 해소하고 우호와 협력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을 넘어 시민사회 차원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평화국가론과 안보평화론은 기존 안보 담론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평화를 통한 안보로의 전환을 촉구하였고 각각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제기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제안된 평화국가론은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차원의 평화 구축에서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 안보국가에서 평화국가로의 국가정체성 변화의 필요성, 평화외교와 윤리외교의 중요성 나아가서는 평화국가 형성의 주체 문제 등 기존의 안보 담론을 넘어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가 성찰해야만 할 중요한 주제들과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안보평화론은 한편에서는 협력적 안보관으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인간안보와 적극적 평화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할 한반도 평화의 규범적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된 정책 차원의 고민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

로 보인다.

위에서 제안된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전략은 이러한 기존 평화 담론의 성과와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평화를 통한 안보 담론의 정당화와 설득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다. 이 제안은 안보나 평화의 기존 이분법과의 대결 및 극복을 염두에 두면서 기존 담론들의 문제의식을 보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논리적 틀을 제안하는 데에 주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평화 담론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평화의 길이 곧 안보의 길이 될 수 있으며, 평화와 안보의 선순환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만 한다.

라.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주체-객체 패러다임에서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안보를 통한 평화 담론을 평화를 통한 안보 담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인식하는 기본 틀, 즉 안보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안보나 협력안보는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힘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결적 안보관을 넘어 상호협력을 통해 안보 위협의 해소와 평화 구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안보를 바라보는 존재론적-인식론적 전제, 즉 철학적 토대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해명하고, 이러한 철학적 토대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와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주의 안보 패러다임은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에 대한 홉스식의 인식 틀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홉스의 주된 관심은 국가 단위 내부에서 자연 상태를 넘어 근대국가를 정초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현실주의 안보 패러다임은 홉스가 국가 단위에서 제시한 자연 상태 개념을 국제 질서 차원으로 확장하고, 국제사회를 자연 상태가 지배하는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자연 상태 속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홉스적 세계 이해는 사회로부터 절연된 개인, 즉 근대적 주체 개념에 토대하고 있다. 조화로운 공동체의 일원,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그리스적 인간관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절연되어 세계와 홀로 맞서고 있는 근대적 주체, 개인 개념이 홉스적 세계 이해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는 자신과 맞서 있는 타인과 세계를 결국 지배와 도구화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근대의 고립된 주체 개념에 기초한 합리성이 도구적, 전략적 합리성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이러한 홉스적 사유 틀은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이론 틀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모든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고립된 주권 국가들이며, 무정부 상태 속의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을 언제나 지배와 도구화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안보는 결국 힘의 우위를 통해 타자를 지배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근대 의식철학의 주체-객체 패러다임은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에서 반복된다. 비판적 국제관계 이론은 현실주의가 전제하는 실증주의, 사실과 가치의 분리,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방법론적 동일화 등의 문제들을 지

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는 모두 근대적 주체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² 세계로부터 절연된 고립된 주체의 시선은 타인과 세계를 사물적 대상으로 양화하게 되며, 이러한 세계에서 타인과 자연세계의 차이는 소멸되고, 규범의 성립 기반 역시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식의 현실주의 안보 패러다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냉전적 평화 또는 지속적인 전쟁위협이 존재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⁴³ 남과 북이 적대적 정체성에 고착되어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군비경쟁을 지속하는 한 남과 북이 이러한 대결 상태를 스스로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는 주변국들의 타산 등을 현실주의적 시각 속에서 고려한다면, 사실상 한반도 평화는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체-객체 패러다임을 전제한 근대적 합리성의 제한성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성찰을 토대로 등장한 것이 바로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패러다임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 1세대인 호르크하이머는 사회조사연구소 소장에 취임한 후 논문 “전통이론과 비판이론”(1937)을 통해서 사회를 있는 그대로 정태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실증주의를 전통이론의 산물로 비판하면서 현존하는 사회의 제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 지향의 이론으로서 비판이론의 출범을 선언하였다.⁴⁴ 이후 그는

42 구갑우, “비판적 국제이론과 한반도의 평화과정-대안적 연구의제의 설정,”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p. 9.

43 Ibid., p. 5.

44 이에 관한 설명은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연구,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서울: 사월의책, 2012), p. 17 이

그의 동료 아도르노와 더불어 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계몽의 변증법』을 서술하게 된다.⁴⁵ 이 저술을 통해 그들은 이성적 주체에 기초한 근대적 계몽의 해방적 기획이 결국은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로, 세계대전과 핵위협을 통한 문명의 자기파괴 과정으로 귀결되었다는 비판적 진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비판적 진단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며, 주체-객체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은 이후 프랑크푸르트학파 2세대인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서 상호주관성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된다.⁴⁶

상호주관성 패러다임은 고립된 개인, 주체를 넘어 너와 나의 인정과 의사소통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주체는 인정과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만 비로소 탄생하고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타자에 대한 도구화를 넘어 협력과 소통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상호인정과 의사소통은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를 구축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와 너의 의사소통은 나와 너의 차이, 나와 너의 이해관계 대립을 그 전제로 한다. 의사소통은 이러한 차이의 기반 위에서 도달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제관계 차원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국가들 사이의 인정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를 통한 공동안보나 평화 구축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체-객체 패러다임을 상호주관성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단순히 대결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상호주관성의 영역은 대결적 관계를 포함하는 역동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나와 너의 인정과 소통을 모델로 하는 상호주관성 패러다임에는 나와 너 사이의 전략적 갈등이나 무시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계기가 내포되어 있다.⁴⁷ 그리고 나와 너의 의사소통 과정 속에는 사실적 진리 여부나 실천적 효용성의 문제, 규범적 타당성의 문제, 상대방의 진실성 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⁴⁸ 이런 점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은 도구적, 전략적 합리성을 포괄하는 더 넓은 합리성을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상호주관성 패러다임은 나와 너의 대결적 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상호인정과 의사소통의 영역 확대를 모색하는 접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상호주관성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 역시 국가들 사이의 적대관계를 협력관계로 단순히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를 주체-객체 틀에서 접근하는 경우 무정부 상태와 힘의 대결만이 불가피한 귀결일 수밖에 없는 데에 반해서, 상호주관성의 틀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상호인정과 의사소통을 통한 무정부 상태의 성격 변화나 극복, 협력을 통한 안보와 평화 구축의 여지 등이 확보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흡스적인 대결적 안보 패러다임 하에서도 힘의 균형, 세력균형을 통한 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

하 참조.

45 테오도르 아도르노·막스 호르크하이머 저,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46 위르겐 하버마스 저, 장춘익 역, 『의사소통행위이론』 1, 2 (서울: 남출판, 2006).

47 악셀 호네프트 저, 이현재·문성훈 역, 『인정투쟁』 (서울: 사월의책, 2011).

48 의사소통 이성의 성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김원식, 『하버마스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5), p. 131 이하 참조.

략적 계산에 입각한 그러한 타협이 언제나 잠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조그마한 상황의 변화나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타협은 언제나 붕괴될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타협조차도 안보 딜레마 개념이 지적하듯이 현실주의적 제약 속에서는 불가능한 과제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결국 안정적인 협력을 통한 공동안보나 평화 구축이라는 발상은 상호인정과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이라는 새로운 발상을 그 기초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또한 정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국제관계에 대한 흡수적 이해의 연장선 속에서 보자면,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바와 같이 전쟁은 또 다른 수단으로서의 정치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에서 전쟁은 모든 국가에게 보장된 권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타협불가능한 개인들 사이의 분쟁 해결의 수단이 결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상위의 권위체와 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관계에서 전쟁은 최종적인 정의를 판단하기 위해 호소할 수 있는 심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정과 소통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정치는 다원성과 복수성의 영역이며, 전쟁은 이를 파괴하는 수단일 뿐이다. 정치의 과제는 다양한 차이들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행위의 영역을 창출하는 데에 있다.⁴⁹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상호주관성 패러다임의 도입이 안보나 평화 문제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자.

49 Heikki Pätömäki, "The Challenge of Critical Theories: Peace Research at the Start of the New Centur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8, No. 6 (November 2001), p. 731 참조.

첫째, 상호주관성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통한 안보와 평화 구축이라는 발상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들 사이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상충 공간을 포용하면서도 국가들 사이의 인정과 의사소통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처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존재론적-인식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통과 인정의 관계는 관련 당사자들의 정체성 변화를 포착하는 개념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인정투쟁과 상호인정이라는 개념은 정체성 변화를 포착하는 데에 유력한 개념적 수단을 제공한다. 각자의 정체성은 서로를 향한 인정투쟁과 상호인정 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⁰ 국제정치학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은 국가들 사이의 정체성 변화, 즉 적대적 정체성에서 친구로서의 정체성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상호주관성 패러다임은 이러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⁵¹

셋째, 소통과 인정 개념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차원의 시민사회 형성과 공론장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는 개념적 수단을 제공한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자체가 공론장의 구조변동에 대한 그의 초기 연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⁵² 상호주관성 패러다임은 본래 국가단위 공론장의 역할에 착안하여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발전

50 인정과 정체성의 관계 및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는 낸시 프라이저·악셀 호네트 저, 김원식·문성훈 역, 『분배냐 인정이냐』(서울: 사월의책, 2014)의 1부 3장, 2부 2장 참조.

51 이에 관해서는 알렉산더 웬트 저, 박건영 외 역,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09) 2부 중 무정부 상태의 세 가지 문화 부분 참조.

52 위르겐 하버마스 저,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서울: 나남, 2004).

과도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고찰은 최근 지구화 과정에 적용되면서 초국적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역할에 대한 고찰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⁵³

넷째, 인정과 소통의 개념은 인간안보나 적극적 평화 개념과도 친연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인정이론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무시를 부정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정의 정의론은 개인에 대한 안보 위협이나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포착하는 데에도 유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⁵⁴

마지막으로, 인정과 소통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서도 좋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비판적 국제관계 이론은 기존 국제질서를 전제로 하는 문제 풀이(problem solving) 방식의 접근을 벗어나 해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해방적 관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버마스 저서 『인식과 관심』에서 유래하는 것이다.⁵⁵ 이런 점에서 비판이론 전통은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넘어서는 비판적, 해방적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대결적 남북관계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분단체제가 가져온 질곡을 성찰하고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과 규범적 지향점을 모색하는 데에는 이러한 근본적

인 해방적 관심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⁵⁶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에 입각하여 남과 북의 협력하에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과정을 가동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과정이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튼튼히 하는 길이라는 인식의 근본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근본적 전환은 안보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3 낸시 프레이저 저, 김원식 역, 『지구화 시대의 정의』의 5장 공론장의 초국적화 참조.

54 이에 대해서는 문성훈, “폭력 개념의 인정이론적 재구성,” 『사회와철학』 20호 (2010) 참조.

55 위르겐 하버마스 저, 강영계 역, 『인식과 관심』 (서울: 고려원, 1996). 하버마스는 인간의 인식을 주도하는 기술적 관심, 실천적 관심, 해방적 관심을 구별하고, 비판이론은 해방적 관심에 의해 주도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론적 접근은 이후 의사소통행위이론이 등장하면서 담론윤리를 통한 사회비판의 규범적 접근 방식으로 대체된다.

56 비판적 국제관계 이론을 고리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접근하는 구갑우의 논의는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구갑우, “비판적 국제이론과 한반도의 평화과정-대안적 연구의제의 설정” 참조.

IV

인권 담론과 평화 담론

1. 인권을 통한 평화 담론의 의미와 한계
2. 평화를 통한 인권 담론의 필요성과 과제: 접근을 통한 변화

이 장에서는 기존의 인권과 평화의 대립과 이분법을 넘어 평화를 바탕으로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담론 전략으로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왜 북한인권이 문제인지, 그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화와 마찬가지로 인권 역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만 하는 보편적 가치이자 이상이며, 따라서 현존하는 그 어떤 국가나 사회도 결코 인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 과정이 남과 북 모두의 인권 개선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⁵⁷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는 남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경직성의 해소, 군비지출 감소를 통한 복지 증진 등 우리 사회 내부 인권 개선에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과 북 사이에는 부정하기 어려운 현저한 인권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북한인권 문제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우선 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⁵⁸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로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과 북한인권 개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 대량아사자와 탈북자

57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제한된 시각을 넘어서 한반도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로는 서보혁, 『코리아 인권』 (서울: 책세상, 2011) 참조.

58 UN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인권위원회를 대체하여 설립된 UN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채택하였다.

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과 우려의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들도 확대되기 시작했다. 북한인권 논의의 초기에는 먼저 북한인권 실태와 심각성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기도 했으나 탈북자들의 증언이 양적으로 축적되고 관련 백서 작업들이 누적되면서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에는 일정한 동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⁵⁹ 이와 더불어 인권이라는 규범을 둘러싼 이해 방식 자체, 즉 인권과 주권의 관계, 인권의 상대성과 보편성에 관한 논란도 진행되었으며, 인권 내부의 우선순위, 즉 자유권 우선인가 생존권이나 사회권 우선인가 하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역시 대체로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 항목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일정한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⁶⁰

이후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주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접근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 집중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목적하에서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들, 예를 들어 북한인권법 제정이나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 UN 차원의 북한인권 조사보고서나 관련 결의안 분석, 향후 북한의 과거청산 문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연구들에 집중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인권 관련 논의들의 진행을 통해서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

성 자체나 인권이 가지는 규범적 보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도출된 것도 사실이지만,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방안, 즉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나갈 것인가를 두고서는 아직도 우리 내부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만 보자면, 평화가 인권을 증진하고 인권이 평화를 증진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전쟁이 그 자체 대규모 인권침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극심한 인권침해는 평화를 파괴하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와 같이 적대적 분단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과 인권을 개선하는 과정이 조화롭게 선순환 하기 보다는 일정한 갈등을 동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 개선을 한반도 평화의 조건으로 앞세우게 되면, 남과 북의 상호인정을 출발점으로 하는 평화 구축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목적으로 북한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이는 결국 북한정부의 인권 침해 상황을 묵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문제, 대북정책 문제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리트머스지 역할을 해온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논란들이 현실 정치적 대립을 통해서 더욱 증폭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⁶¹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인권을 통한 평화, 평화를 통한 인권이라는 표제 하에 인권 우선론과 평화 우선론의 논지를 각각 검토해보고자 한다.

59 대표적으로 통일연구원에서는 1996년부터,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7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해왔다.

60 이에 대해서는 김원식, “북한인권 담론의 규범적 논거들에 대한 검토: UN의 개입에 관한 국내 시민사회 담론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1호 (2006)과 장은주,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북한 인권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철학적 토대의 모색과 관련하여,” 『사회와철학』 17호 (2009) 참조.

61 진보-보수 대립과 북한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권숙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남갈등의 이해」, p. 60 이하 참조. 이념 갈등이 언론을 통해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으로는 박길성, 「한국사회의 갈등지형과 경향」, 『한국사회』 제9집 (2008), p. 18 이하 참조.

1. 인권을 통한 평화 담론의 의미와 한계

가. 핵심 논지

인권을 통한 평화 담론은 인권의 규범적 보편성과 가치의 최고성에 기초하여, 유의미한 평화의 조건은 인권의 증진이 되어야만 하며, 인권 보장을 통해서만 비로소 한반도 평화도 가능할 수 있다는 원칙적 논점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보다 인권을 우선시 하는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도 다양하고 그 내부에도 다양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아래에서는 이러한 입장의 핵심 논지를 간략히 정리한 후 이에 기초하여 이후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은 그 어떤 여타의 가치를 위해 결코 양보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다. 물론 인권이라는 보편적 권리가 신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거나 인간의 자연권이라는 식의 특정한 정당화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어떤 권리를 인권이라고 명명하는 한에서 그 권리는 여타의 실용적 가치와 거래될 수 없어야 한다는 점만은 명백해 보인다. 이는 다수의 이익이나 공익의 증대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해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수는 없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보자면, 남과 북의 평화 구축 과정이 유의미한 이유는 그것이 남과 북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만일 남과 북의 평화가 북한주민들의 인권 침해를 묵인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그러한 평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함축하기도 한다. 남과 북의 적대관계와 전쟁 발발 가능성을 해

소하는 과정으로서의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이 만일 현존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과정이 된다면,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북한 독재정권이 더욱 강화되어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확대하게 된다면, 과연 이러한 평화를 우리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인권 개선이 없이 과연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인권을 통한 평화 담론은 남과 북의 대립의 근원을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북한정권 자체에서 찾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이 다른 많은 나라들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인 남과 북의 적대관계가 장기간 지속되는 근본 원인은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⁶²

이러한 견해는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1795) 그리고 이러한 칸트의 입장에 대한 해석에 바탕을 둔 ‘민주평화론’을 통해서 정당화되기도 한다.⁶³ 칸트는 위의 저서의 확정조항 1에서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조건으로 모든 국가들이 공화정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 칸트가 말한 공화정이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의지에 대한 대의(representation)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칸트는

62 이러한 지적으로는 윤평중, “국가이성론으로 본 ‘북한문제’와 통일 - 21세기 한국 정치철학의 과제,” 『철학과 현실』 통권 제96호 (2013), pp. 104-5. 그는 “... 민주공화정과 자유민주질서를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성과, 유일사상체제와 주체사상을 중핵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가이성 사이에 어떤 접점이나 중간 지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63 이러한 시도로는 오영달, “남북한 정치체제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 칸트의 공화주의적 평화론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7권 2호 (2016) 참조.

대의제에 기초한 공화정이 전쟁의 피해를 염려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통해서 전쟁을 제어할 수 있는 반면에 군주 1인의 자의적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전제정 하에서는 군주들이 언제든 전쟁을 마치 유희처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⁶⁴

또한, 이러한 발상에 기대어 현대의 민주평화론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들 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자 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이래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비민주주의 국가들과 전쟁을 벌였을 뿐,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분리된 평화(separate peace)의 지대가 형성되어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평화가 구현되어 왔다는 것이다.⁶⁵ 인권을 통한 평화 담론은 이러한 논의에 기대어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 역시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권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⁶⁶

결국 인권을 통한 평화 담론은 첫째,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으며, 둘째,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정권의 민주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4 임마뉴엘 칸트 저, 이한구 역,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서울: 서광사, 1992)의 확정조항 1부분 참조.

65 칸트 해석에 입각한 분리된 평화 구상에 대해서는 Michael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2, No. 3 (Summer 1983) 참조.

66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정경환·신왕철,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참조.

나. 인권 우선론과 대북 정책

인권을 통한 평화 담론은 일차적으로는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우선적 과제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의 강화,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 방식의 모색, 외부정보의 유입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 개선, 이를 위한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사이의 협력 체계 구축과 이에 기초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인 북한정권의 민주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⁶⁷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남북 적대관계의 근원인 북한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북한을 민주화함으로써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세적인 차원에서 회고해보자면, 이러한 담론은 주로 북한붕괴론 및 미국 부시정부의 공세적 대북정책을 그 배경으로 하여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한붕괴론은 1994년 김일성 사망 그리고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경제 전체가 멈춰서고 대량아사와 탈북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국내외로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의 붕괴는 기정사실로 간주되었으며, 단지 그 시기가 언제인가가 문제가 될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2008년 김정일 건강 이상

67 황장엽, 『황장엽의 대전략』, 월간조선사, 2003 참조.

징후 발생, 2012년 김정은 체제의 등장 등을 계기로 북한체제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으며, 내부 모순으로 인하여 붕괴가 임박했다는 예측은 반복되어 왔다. 북한체제 붕괴가 임박했다는 이러한 정세판단은 북한민주화 나아가서는 북한민주화를 통한 흡수통일에 의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구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의 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도 당시 북한민주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의 외적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목적 하에 공격적인 민주주의 확산 정책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2003년 3월 미국은 마침내 테러와의 전쟁 나아가서는 민주화를 명분으로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부시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창립 2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동의 심장부에 자유 이라크를 세우는 일은 세계 민주주의 혁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⁶⁸ 세계민주화라는 거대 담론 하에서 이라크의 민주화가 북한의 민주화로 나아가서는 북한의 민주화를 통한 통일과 평화로 연결될 수 있는 인식의 틀이 제공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세적인 배경과 우리 사회 내부에서 개선된 인권을 통한 평화 담론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권을 통한 평화 나아가서는 북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역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통한 북한민주화를 옹호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붕괴론이나 당시 미국 네오콘의 대외정책은 인권을 통한 한반도 평화 담론 나아가서는 북한민주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 주장의 배경을 제공했을 뿐, 북한민주화론 자체가 미국 주도의 전쟁을 통한 북한민주화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⁶⁹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인권을 통한 평화 담론은 첫째, 소극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주장, 둘째, 적극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인권의 근본적 개선, 즉 북한민주화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 의미와 한계

그간 인권 우선론에 입각한 북한인권 담론은 인권 규범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데서 큰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이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연결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한반도의 평화 상태를 위해서는 북한정권과 사회의 일정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잘 지적해 주었다. 인권이 여타 가치와 거래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 역시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과정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

68 George W. Bush, “Remarks by President George W. Bush at the 2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https://www.ned.org/remarks-by-president-george-w-bush-at-the-20th-anniversary/>

69 북한민주화론을 체계화하여 개진한 황장엽의 경우도 전쟁이 아닌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경쟁을 통한 북한민주화를 주장했을 뿐이다. 황장엽, 『황장엽의 대전략』 참조.

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 개선을 한반도 평화 구축의 조건으로 설정하는 인권을 통한 평화 담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점에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인권 개선을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한반도 평화 구축의 선행조건으로 규정하는 경우 인권을 통한 평화 담론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용해야 할 남북 사이의 접촉면을 확보하는 데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일반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 과정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북한 정부는 한편으로 인권 침해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인권 개선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북한인권의 근본적 개선을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 구축의 조건으로 강하게 내세우고 북한이 이에 반발한다면, 남북 사이의 접촉면은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로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내적 인프라 구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접촉면 확대에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북한인권 개선의 장기적인 과정을 고려하면서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 속에서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점진적 접근의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둘째, 북한민주화론의 경우처럼 북한정권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인권과 평화의 증진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남북의 적대적 관계가 강화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실에서도 북

한붕괴론의 예측과는 달리 북한체제는 여전히 장기지속하고 있으며, 남북 적대관계 속에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개발에 매달리게 되면서 남과 북의 적대관계와 상호위협은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은 물론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외부의 적과의 대결과 전쟁 위협이 강조되고 내부 단결과 북종만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들 개인의 인권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특히 UN 차원의 다양한 개입들,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압박은 분명 북한 정부에게도 북한인권 개선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왔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그간 북한정부의 일정한 개선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⁷⁰ 그러나 위에서 지적된 인권을 통한 평화 담론의 한계들을 고려할 때, 향후 남북 접촉면 확대는 물론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과 매개할 수 있는 점진적인 북한인권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70 관련한 북한의 주요 조치로는 유엔 장애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2017. 5), 2009년 헌법 개정시 인권 존중 및 보호 명시, 2004년과 2005년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 금지 원칙 도입 등.

2. 평화를 통한 인권 담론의 필요성과 과제 : 접근을 통한 변화

가. 전개과정 및 핵심 요지

북한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진보진영의 평화 우선 담론은 주로 수세적 반응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⁷¹ 평화 우선 담론은 국내외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가 편파적이고,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서구중심의 인권, 즉 자유권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다양한 비판적 입장들을 제시하면서 국내외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해 반발해 왔다.

평화 우선 담론이 제시한 이러한 비판적 견해들은 북한인권 문제 제기가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 구축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논의를 주도하는 국내 보수 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 그리고 북한정권 교체나 북한민주화를 명분으로 하는 한반도 위기 상황 고조에 대한 우려 등이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발을 더욱 강화시켜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화 우선 담론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 대응에 대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회피, 침묵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평화 우선 담론은 평화권 개념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게 된다. 평화권이라는 제3세대 인권 개

념을 도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이 북한인권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 차원의 대응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이다.⁷² 평화를 우선시 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동시에 그 자체가 북한인권 개선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평화권이 비록 자유권이나 사회권과 같은 국제법적 지위를 확고하게 획득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평화가 인권의 필요조건이라는 인식은 국제사회에서 폭넓게 확대되어 왔다. 전쟁 그 자체가 대규모 인권 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평화야말로 인권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전쟁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평화야말로 인권 개선의 첫째가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을 명분으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의 부정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민주화론의 경우처럼 북한정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북한인권 개선 전략은 그것이 북한 침략을 위한 전쟁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평화적, 반인권적 전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화권 담론을 통해 평화 우선 담론은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야말로 북한인권 개선의 첫걸음이 되어야하며, 둘째, 북한인권의 경우 역시 평화로운 수단에 의한 인권 개선 전략만이 용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71 이러한 평가로는 서보혁, “진보진영은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창작과 비평』 제2권 1호 (2014), p. 36 참조.

72 이에 대해서는 임재성,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권: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91호 (2011), p. 186 이하 참조.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면, 북한정권이 북한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던 주된 명분을 제공했던 외부의 적의 침략 위협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북한인권 상황 개선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북 압박이나 북한민주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시도들은 남과 북의 적대관계와 전쟁 위협을 강화하며 이는 다시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정치적 명분과 상황을 제공하는 만큼, 오히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우선시하고 그 부수효과로 북한인권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북한정권의 정치적 탄압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며, 나아가서 다양한 교류협력 과정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의미와 한계

평화권 개념에 입각한 평화 우선 담론은 남과 북의 장기간의 적대관계로 인해 전쟁 위기가 반복되어 온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야말로 북한인권 개선의 필수 조건이 된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위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평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인권이며, 나아가서 자유권이나 사회권과 같은 여타 인권의 항목들이 실현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북한인권 문제를 단지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로만 바라보는 제한된 시각을 넘어서 한반도의 분단 상황 전반

까지 고려하는 보다 폭넓은 접근 시각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⁷³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정권과 북한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넘어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맥락과 외부적 조건으로서의 한반도 분단체제까지 고려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을 북한인권 개선 과정과 연계하여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넓은 시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평화 우선 담론은 인권의 평화적 본성에 부합하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이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밝혀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우선 담론은 남과 북의 평화가 북한인권 개선 과정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하는 경로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의 평화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평화의 부수 효과로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가 결국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경우에 따라 평화를 위해 현재의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시도들이나 유엔 차원의 기술협력 등을 거부해온 북한의 행태를 고려한다면, 한반도 평화가 반드시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부수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73 이병수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시야를 북한 내부 문제를 넘어 보다 복합적인 차원으로 넓힐 것을 제안한다. “인권의 문제를 한반도의 분단체제 극복과 통일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병수, “한반도 통일과 인권의 총위,” 『시대와 철학』 제29권 1호, 통권 82호 (2018), p. 81

보장은 없다.⁷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개선이 선순환 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이유다.

다. 접근을 통한 변화: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 담론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먼저 인권이 우선이나 평화가 우선이나 하는 식의 기존의 이분법을 극복해야만 한다. 인권을 우선시 하면서 평화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평화를 우선시 하면서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방식의 이분법 하에서는 평화와 인권이 서로를 증진시키는 선순환의 논리가 성립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가 인권 증진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 증진을 통해서만 비로소 평화도 공고화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⁷⁵ 전쟁을 통해 평화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인권 증진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평화가 공고화되기를 기대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다.

이와 동시에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평화가 곧 인권이고 인권이 곧 평화라는 식의 개념적 혼란 역시 피해야 한다. 만일 평화와 인권이 그 자체로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양자의 선순환이나 상호증진이라는 것 자체도 불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화권이라는

74 이와 관련해서는 모춘흥·최진우,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유럽연합(EU)의 對북한 인권정책,” 『통일연구』 제22권 1호 (2018) 참조.

75 우승지는 북한인권 문제의 해법에 대한 제안을 (1) 북한 압박론, (2) 선접촉, 후변화론, (3) 동시접근론으로 구별하고, 북한민주화론을 (1)의 경우로, 참여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2)의 경우로, EU의 접근방식을 (3)의 사례로 든 바 있다. 그 역시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승지, “북한 인권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6권 3호 (2006), p. 198 이하 참조.

개념에 거의 모든 인권의 항목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사실상 평화와 인권이라는 개념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⁷⁶ 이런 식의 접근은 현실에 존재하는 평화와 인권의 갈등을 개념을 통해 해소시켜버림으로써 오히려 현실에 대한 분석 자체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평화의 개념을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로 확장하는 경우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 일정 부분 정의(Justice)나 인권 개념에 근접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평화와 인권 개념 자체를 동일시하는 것은 복합적 현실을 분석하는 데에 기여하기보다는 혼란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원칙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전략으로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전략을 간략히 제안해 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접근을 통한 변화는 과거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던 시절 서독이 시도했던 동방정책의 모토였다. 이 표현을 여기서 차용한 이유는 북한인권 개선의 조건이 남과 북의 평화이며 평화를 통해서만 남과 북의 접근도 나아가서는 그를 통한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도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은 한반도에서 평화야말로 북한인권 개선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수용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과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과정을 매개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협력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이를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 제고와 실질적

76 ‘산티아고 평화권 선언’의 경우, 평화권에 교육, 환경, 군축, 불복종, 사상과 종교의 자유, 이주 등 거의 모든 인권 항목들을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서보혁, “국제 평화권 논의의 추세와 함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2권 1호 (2012), p. 76 이하 참조.

인권 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인권의 보편성과 더불어 자유권, 사회권, 평화권 등 인권 항목들의 상호의존성이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해야 한다. 인권은 여타의 실용적 가치를 위해 타협할 수 없는 규범적 원칙이며, 인권의 각 항목들은 서로가 서로를 촉진하는 동시에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자유권 없는 사회권이나 사회권 없는 자유권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 없는 인권도 인권 없는 평화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은 이러한 인권 원칙 자체에 대한 고수와 더불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점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 판단 하에서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트랙 전략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과 협조가 동시에 필요하며,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의 주범인 동시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조자라는 이중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비난하고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로와 접촉면 확대를 적극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남북 사이의 접촉면 확대를 위해서는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북한이 취해온 태도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심 대상으로 부상한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에 대해 이중적인 대응 자세를

취해왔다.

한편으로 북한은 북한 체제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 외부의 비난과 압력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이러한 비난과 압력을 이중기준에 의한 정치적 책동으로 규정하고 협력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의 비판 중 직접적인 체제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사회권이나 취약계층 인권 개선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대응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보편적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UN의 북한인권결의안, 결의안에 기초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대한 협조를 전면적으로 거부해 온 북한은 이와 달리 2009, 2014,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보편적정례검토에 참여해왔다.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UN의 개입에 대해 '정치화, 선별성, 이중기준'을 문제 삼으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압력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해왔던 반면, 193개 UN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UPR에 대해서는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여 왔던 것이다.

보편적정례검토 과정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권고에 대해 북한은 동일한 이중적 대응을 지속해 왔다.⁷⁷ UPR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1차 회기에서 167건, 2차 회기에서 268건, 3차 회기에서 262

77 김원식, 「보편적정례검토의 북한인권 개선 효과 평가 및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통권 79호 (2020) 참조.

건의 권고안이 제안되었다. 특히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직후 진행된 2차 회기에서는 권고안에 담긴 비판의 수위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러한 외부의 권고에 대해서도 정치범수용소, 송환탈북자에 대한 박해 등 북한체제에 대한 직접적 위협 요인을 내포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권고는 지속적으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다. 반면에 북한은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일반적 권고, 사회권 관련 권고, 특히 북한 내부의 법제 개선에 관한 권고안은 적극 수용하면서 관련 개선 노력과 상황을 보고해왔다.

이런 점들을 참고한다면, 향후 북한과의 접촉면 확대에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주로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사회권 개선 관련 권고에 대해 수용적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북한과의 접촉면 확대를 주로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대북 지원과 협력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내부 법제 개선과 관련하여서도 수용적 입장을 취해온 만큼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필요한 법제 개정과 관련된 법치지원 분야에서 접근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UPR 과정에서 “접근이 없이는 지원도 없다(No Access, No Aid)”는 UN의 원칙(1차 정례검토), 인도주의기구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모니터링 환경 보장(2차 정례검토), 인권기반접근(3차 정례검토) 등의 권고를 수용해온 만큼 향후 대북지원 과정에서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도 요구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에서는 북한이 인권 침해 사실 자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거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침해 상황

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련 정보 추적 활동을 지속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내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북한 당국과의 일정한 충돌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2018년에도 한반도 평화국면 도래를 활용하여 우리 정부에 북한인권법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통일연구원의 정례적인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또한 북한은 향후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협력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당국도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원칙적 태도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원칙적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근을 통한 변화를 위해서는 남북 사이의 접촉면 확대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남과 북 사이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증대, 이를 통한 남북 주민들 사이의 접촉면 확대를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접근을 통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접촉면들을 활용하여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접근 방법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② 사회문화교류 ③ 경제협력 ④ 법치지원 등 다양한 통로로 북한과 외부세계의 접촉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접근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각종 접촉면을 활용하여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

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선제적으로 개발되고 준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한 측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 판단에 기초하여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각종 협력사업의 파급효과를 통해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효과를 우회적으로 제고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협력에 관한 북한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지원과 협력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문화 교류는 그 자체가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획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북 경제협력 과정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교류 확대에 수반되는 북한 법률 개정 수요들을 파악하여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북한 법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가 북한인권 개선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부재로서의 평화가 곧바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은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을 활용하여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화 하는 길이 되어야만 한다.

V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

1.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의 대립
2.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의 선순환: 과정으로서의 통일

이 장에서는 기존 통일 담론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최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평화공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의 바람직한 연계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성급한 통일론은 오히려 남북 대결만을 조장한다는 지적과 통일을 포기한 평화공존론에 대한 비판 등을 참조할 때,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을 통해서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1.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의 대립

가. 평화통일론

장기간에 걸친 일제 식민 시대의 고통을 체험한 한민족에게 자주적 민족국가 수립은 민족사적 제1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항일 투쟁의 역사 자체도 일제 식민치하로부터의 해방과 자주적 민족국가 수립을 제1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해방 후 남한과 북한에 독자적인 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두 정부 모두에게 통일은 민족사적인 과제로 간주되어 왔다. 정부 수립 이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인식 하에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론’을 전개하였으며, 북한 정부는 남조선 해방과 통일을 명분으로 결국 6.25 전쟁을 일으켰다.

한국전쟁의 종결과 더불어 ‘북진통일론’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후 우리 정부는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평화통일 원칙은 1972년 유신헌법 이래 계속 우리 헌법 전문에 명기되었다. 현재 대한민

국 헌법 제4조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고수해 온 평화통일의 원칙은 통일이 반드시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통일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목표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두 가치 모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양자의 관계는 주로 통일이 목적가치 또는 제1가치이며, 평화는 이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수단적 가치로서 해석되어 온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는 하나의 민족은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요구가 그 근저에 놓여 있었다.⁷⁸

대한민국 정부는 위와 같은 평화통일의 원칙하에 그간 다양한 통일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북한에 대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1960년대에는 先건설 後통일론을, 1970년대에는 先평화 後통일론을 제기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은 1980년대의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을 거쳐 1990년대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⁷⁹

무력을 통한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북진통일론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오직 평화로운 방법을 통한 통일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동시에 통일이 민족사적 과제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떤 방

식으로 통일을 이룰 것인가, 통일국가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 이외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논의되어 왔지만, 대체로 통일이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목적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적어도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사회 내부에서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⁸⁰

물론 북한 역시 공식적으로는 평화통일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9조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통일 원칙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먼저 7.4 남북공동성명(1972)을 통해 남과 북은 평화통일을 통일의 원칙으로 천명했다. 또한 평화통일 원칙은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 10.4, 4.27, 9.19 남북정상공동선언에서도 지속적으로 재확인 되어 왔다.

그러나 남과 북이 이와 같이 공히 평화통일이라는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쌍방 간에 여러 차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각각 자기체제 중심의 통일관을 고수하여 왔다는 사실 역시 부인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 제4조는 통일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통일의 전제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 조선로동당규약 서문 역시 조선로동당의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고 중국에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8 통일의 민족사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는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 철학』 제21권 2호 (2010), p. 358 이하 참조.

79 임수환, “한국사회의 통일담론과 평화통일전략,” 『평화학연구』 제8권 제1호 (2007), p. 170 이하 참조.

80 이에 대해서는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0), p. 194 참조.

남한과 북한이 각각 서로의 체제와 이념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국가로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우위의 변화에 따라서 남과 북은 서로의 통일 의도를 지속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 민주화를 통한 흡수통일을 기도하고 있다는 우려를, 우리는 북한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흡수통일을 기도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것이다. 양립 불가능한 두 이념과 체제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쌍방의 통일 추구는 서로에 대한 위협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⁸¹

남과 북의 현 체제가 존속하는 한 통일국가 구성에서 남한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북한은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 내부에서는 통일 추구에 대한 회의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가능한 통일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남과 북의 평화로운 공존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들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남북 쌍방이 통일을 강조하고 추구할수록 상호간의 체제갈등과 대결만이 고조되는 악순환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통일 담론이 오히려 남과 북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의 진보정권 집권 이후 등장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남북관계는 큰 단절과 후퇴를 겪게 된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개발을 가속화 하고, 남한도 김정일 건강 이상설, 김정은 체제 등장 등을 계기로 북한붕괴를 기대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81 남북한 체제의 양립불가능성에 대한 논의로는 윤평중, “국가이성론으로 본 ‘북한문제’와 통일: 21세기 정치철학의 과제,” p. 104 이하 참조.

통일세,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등 정부 주도의 통일 담론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우리주도 통일에 대한 기대 확산과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결국 남북관계도 대결과 갈등의 격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주도의 흡수통일론은 평화통일의 원칙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서는 결국 남북 공존을 통한 평화보다는 통일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통일 우선론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 우선론의 현실적 불가능성과 부정적 효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회의, 평화에 대한 요구의 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평화공존 담론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나. 평화공존론

하나의 민족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는 기존 평화통일 담론, 특히 성급한 통일 추진 움직임들이 오히려 남과 북의 갈등과 대결만을 확대시켜 왔다는 반성에 기초하여 최근에는 통일이라는 목적 자체를 소거할 필요가 있다는 평화 담론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들은 통일이라는 목적 자체를 소거하는 남북 평화공존⁸² 또는 양국(兩國)체제⁸³ 구상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다.⁸⁴ 이제 통일이라는 불가능한 목적 자

82 최장집 교수 인터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 『시사IN』 제558호 (2018).

83 김상준, “분단체제와 양국체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84 민족주의의 역압성과 한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임지현의 경우도 이러한 담론의 한 사례로 볼 수 있겠다. 그는 “‘분단극복이 아닌 분단체제 극복’이 문제라면, 통일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임지현, “다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창작과 비평』 제30권 3호 (2002), p. 200.

체를 포기하고 남과 북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상태를 새로운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러한 주장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⁸⁵ 북한붕괴론의 오류와 북한체제의 장기존속 전망, 장기분단에 따른 남북 간 이질성 심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분단과 대결 체제의 민주화 진전 지연 효과에 대한 반성, 脫민족주의 사조의 확산,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분기 등을 주요한 요인들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붕괴론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 몰락과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등장한 이후 김정일 건강 이상 및 사망, 김정은 체제 등장 등을 계기로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이러한 판단은 임박한 통일을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북한 핵보유를 통해 외부의 군사적 개입을 통한 북한 체제 변화 시도도 불가능해지면서 단기간 내에 북한이 붕괴하거나 이로 인해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⁸⁶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지정학적 단층선은 이미 공고하게 형성되었으며, 여전히 미중 사이의 대립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 통일보다는 북한과의 장기적인 평화 공존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분단이 장기화 되면서 남과 북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도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007년 34.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응답률은 16.5%에 불과했다. 물론 2018년에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응답률이 21.9%로 일부 증가하기도 했다. 또한 동 조사에서 통일의 이유에 관한 문항에서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07년 50.7%에서 2017년 40.3%로 감소추세에 있다. 물론 이 역시 2018년에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응답률이 45.1%로 일부 증가하기도 했다.⁸⁷ 조사 시기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한민족이 반드시 한 국가를 건설해야 하며 통일이 지연된 민족사적 과제라는 인식이 약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도 서서히 변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셋째, 통일이라는 목표가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오히려 강화하고 이로 인해 분단체제가 지속되었으며, 이는 남북한 모두에서 시민들의 민주적 요구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해왔다.⁸⁸ 상호대립으로 인한 ‘예외 상황’과 ‘전쟁 상태’가 지속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을 주장하는 순간 이념적 논란이 재가동 되었고, 정

85 평화와 통일의 분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는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p. 194 이하 참조.

86 북한붕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는 박형중,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 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현대북한연구』 제 16권 1호 (2013) 참조.

87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7 통일의식조사』 (2018), p. 34 이하; 『2018 통일의식조사』 (2019), p. 34 이하 참조.

88 김동춘,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경제와 사회』 통권 제89호 (2011).

부에 대한 비판세력은 ‘중북좌파’라는 식의 적대세력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물론 북한 정권 역시 미제국주의의 침략 위협을 내부의 집단주의적 단결을 강요하는 주된 명분으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남과 북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도 이제 대립을 넘어 남북 사이의 평화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넷째, ‘1민족 1국가’를 전제로 한 통일구상은 탈(脫)민족주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족주의의 폐쇄성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고 우리 사회도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반드시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민족 재통합이라는 형태의 통일이 과연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의구심들도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 개념을 고수하는 쪽에서는 열린 민족주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로의 변용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민족 개념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헌법 애국주의, 세계시민주의 등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들도 진행되었다.⁸⁹

다섯째,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분기 현상 역시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이래 통일문제는 진보세력의 핵심 화두 중 하나였으나,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반복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 사회 차원에서 평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성급한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통한 한반도 평화가 우선적 과제로 설정되어야만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게다가

2003년 이라크 전쟁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통일운동 진영과 평화운동 진영 사이의 일정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⁹⁰ 한반도 평화 구축을 명분으로 과연 이라크 파병이 용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 사안이었다. 물론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이러한 일정한 분기 현상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에서는 주도적 담론인 ‘분단체제론’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일은 여전히 궁극적인 목표로 간주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보다는 평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평화공존론의 등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성찰들에 기초하여 평화공존론은 한반도에 남과 북이라는 독립된 두 국가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과 북은 이미 UN 동시 가입을 통해서 국제정치적으로 독립된 두 개의 국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한의 수교국은 190개국, 북한의 수교국은 161개국이며, 이중 동시 수교 국가가 157개국에 이르는 상황이다.⁹²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급한 통일 요구가 결국 남과 북 사이의 상호대립과 갈등만을 강화한다면, 이제 이러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 자체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남과 북은 UN 동시 가입(1991)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독립된 주권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두 개의 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90 서보혁, “한국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p. 122.

91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8).

92 외교부, 『2019 외교백서』, p. 264 참조.

89 이에 관해서는 서보혁, “통일문제의 평화학적 재구성,” 『한국민족문화』 제63호 (2017), p. 36 이하 참조.

결국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면하여 기존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소거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양국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결론이다.⁹³ 이러한 구상은 독립된 주권을 가진 남과 북 사이의 평화 유지와 교류협력 상태를 최종적인 대북정책 목표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남북기본합의서(1991)에 적시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규정을 폐기하고, 향후 남북수교를 통해서 “한 민족이 세운 두 나라의 특수한 나라대 나라의 관계”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⁹⁴

이렇게 통일이라는 목적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흡수통일론을 배제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이 체제보장의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을 교환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합의가 이미 여러 차례, 최근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2018. 6. 12)을 통해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상의 장점은 먼저 분단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남이나 북 일방을 중심으로 하는 흡수통일 우려를 해소시켜 남북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고 완화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남과 북의 평화가

93 김상준의 경우 양국체제와 통일 사이의 관계 설정은 아직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양국체제가 남북통일로 가는 중간역이라는 설정을 반드시 못 박을 필요가 없음”, “1민족 1국가여야 한다는 필연이 없음”이라고 서술하지만, “분단체제와 양국체제,” p. 546. 다른 곳에서는 양국체제를 “한 민족 두 나라 공존을 통해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로 규정하기도 한다. 김상준, “코리아 양국체제 한 민족 두 나라 공존을 통해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 『한국사회학』 52권 4호 (2018).

94 김상준, “분단체제와 양국체제,” p. 545.

정착되면 지속적 ‘예외 상황’ 해소를 통해서 남과 북 내부의 억압을 제거하고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목적을 소거하고 평화공존 혹은 분단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제기된 기존 비판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영철의 경우는 평화와 통일은 단지 이론적으로만 구별될 뿐, 현실에서는 결코 구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평화로운 분단 혹은 공존이 항상(恒常)적인 것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는 분단을 국경선으로 바꾼다는 것은 결국 두 개의 한국 논리이며, 동서독 통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위적 분단국가의 국경선은 항상적인 불안정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⁹⁵ 다음으로 서보혁의 경우는 평화를 수단으로 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간주해 온 기존 평화통일 개념에 맞서 통일평화 개념을 통해 “평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통일은 평화로 가는 길에 달성해야 할 중간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그는 체제공존, 상생호혜를 추구하는 분단평화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어서 그는 통일문제가 언젠가 해결될 역사적 당위라고 언급하며 “통일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⁹⁶

필자는 먼저 정영철의 경우와는 달리 양국체제 구상이 그저 이론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분단 그 자체가 폭력의 근원이 아니라 분단된 두 국가 중 한 국가를 중심으로 통일하려는 염원이 폭력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분단 극복 없는 평화공존 자체도 하나의 대안

95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p. 204 이하.

96 서보혁, “통일문제의 평화학적 재구성,” p. 14 이하.

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분단평화나 양국체제의 현실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서보혁의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통일을 역사적 필연성이나 당위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적 필연성이나 당위라는 개념은 입증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필자는 통일이라는 목적 자체를 소거하고 남북관계를 독립된 두 개의 국가관계로 상정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⁹⁷

첫째, 우선 통일이라는 목적 자체를 소거하는 것은 ‘평화통일’ 추구하고 관련된 현행 헌법정신은 물론 기존의 남북합의 정신과도 불일치한다는 문제다. 7.4 남북공동성명에 평화통일 원칙에 대한 합의가 명기된 이래 주요 남북합의문들은 모두 남북한의 ‘통일지향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통일 목표의 공식적 폐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통일에 침묵하고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통일 포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바가 있다.⁹⁸

둘째, 남북관계를 양국관계로 설정할 경우 남북관계 발전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 정상적 국가관계라면 남북 적대관계 청산만이 필수적인 과제가 될 뿐이며 그 이상의 남북관계 발전은 단지 남북 각각의 ‘손익’ 관점에서 접근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혈연민족 개념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강조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적어도 공식적인 담론 차원에서는 양국체제 구상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⁹⁹

셋째, 양국체제는 영구분단 상태로 귀결될 수 있으며, 동북아에서 미중대립이 격화되는 경우 남북이 ‘갈등의 대리자’가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최근 들어 미중갈등은 패권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설령 분단된 남북 양국이 평화공존 상태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미중갈등의 원심력에 의해 대리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¹⁰⁰

넷째, 지구화가 일종의 ‘병목상태’에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과 민족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탈민족주의 요구는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족 개념을 폐기하기보다는 이를 통일을 추동하는 현실적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그 내부 포용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주의가 반드시 배타성과 공격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한국과 같은 저항적 민족주의 전통의 경우 배타성과 공격성보다는 공존과 평화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내장하고 있는 측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⁰¹

97 평화공존 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는 이병수, “통일과 평화의 길항관계,” 『시대와 철학』 제26권 1호 (2015). 양국체제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일영, “양국체제인가, 한반도체제인가,” 『동향과 전망』 통권 102호 (2018) 참조.

98 박세일, “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선진화포용 통일론,” 화해상생마당 주최,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2009. 9. 29) 발표문.

99 북한의 혈연중심 민족 개념에 대해서는 최선경·이우영, “‘조선민족’ 개념의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제1호 (2017) 참조.

100 이러한 지적으로는 이남주, “분단 해소인가, 분단체제 극복인가,” 『창작과 비평』 46권 1호 (2018), p. 25.

101 3.1 운동이 보여준 평화와 민주에 대한 지향성, 김구 선생이 지향했던 자유와 평화 지향의 민족국가에 대한 이상 등은 이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나중석, 『대동민주 유학과 21세기 실학』 (서울: 도서출판b, 2017), p. 677 이하 참조.

2.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의 선순환: 과정으로서의 통일

이제 기존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의 대립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기초로 해서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이 선순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자. 선순환 방안은 기존의 조급한 통일 담론이나 통일 우선론 등에 대한 비판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평화공존론으로 대체하기 보다는 평화와 통일을 선순환의 과정으로 이해해 보기 위한 하나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면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이 제1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열린 목표점으로서 통일이라는 과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목적 자체를 소거하기보다는 조급한 통일 요구나 구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자제하면서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 간의 공존이 필요하며, 상호공존을 위해서는 남북 일방 주도의 통일 논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공존의 과정을 통해 추구해나가야 할 궁극적 목표는 여전히 분단 상태의 극복과 통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우선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이 남과 북의 ‘차이의 인정과 공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양립 불가능한 체제와 이념을 가진 남과 북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와 서로의 안보 우려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북한의 핵위협과 남한의 첨단무기 및 한미동맹이 경합하는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은 남과 북의 상호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체제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절제하고 우선은 현실주의적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남과 북이 서로의 모든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남한의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를 수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도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와 민주라는 보편적 가치를 이미 학습하고 일정부분 체화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북한체제에 대한 규범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을 유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¹⁰²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남과 북 두 체제의 통일을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과 북의 현행 정치 이념 사이에 제3의 길을 모색하고 그것을 통일의 기초로 삼겠다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허망한 기대에 불과하다. 오늘날 동등한 자유와 이에 기초한 민주적 질서를 넘어서는 제3의 규범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가지는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과정의 개념이다.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과정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현재 상황에서 양립 불가능한 체제와 이념을 가진 남과 북이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는 통일 과정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일국가의 헌법적 원리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리고 단기간 내에 하나의 국가나 체제로의 통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과 북이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할 수

102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 정체성 형성과 통일 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로는 한승원, “한국 국민정체성의 ‘민주적 반추’와 통일 문제,” 『사회와 철학』 제22집 (2011) 참조.

있는 최대치는 하나의 국가로의 통일지향성이라는 원칙과 상호합의 가능한 절차를 통해 통일을 이룩한다는 과정에 대한 합의 정도가 최대치가 될 것이다.¹⁰³

다른 한편으로 과정 개념은 남북 평화공존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남과 북의 상호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남북 평화공존과 남북관계 발전은 분단체제가 가지는 폭력성을 제거함으로써 남과 북 모두에서 내부적인 민주적 역량의 확대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⁰⁴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미래 통일국가의 형태나 헌법 관련 논란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 빠져들기보다는 하나로 지향은 남겨두되 미래의 하나 된 통일의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방된 상태로, 미래 세대의 선택 공간으로 남겨두자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통일국가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두 체제의 양립 불가능성으로 인해 불가능한 과제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통일은 열린 가능성이자 지향점으로 개방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상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면서도 평화 구축 과정을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의 안보 우려 해소로부터 시작되는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남북관계의 발전, 남과 북의 적대적 정체성 해소와 우호적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변화한 남과 북이 통일을 논의할 수

103 이병수는 6.15선언 제2항을 통일과정에 대한 합의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p. 380.

104 임지현은 “‘탈분단’으로 조성된 평화공존체제 속에서 북과 남이 각각 민주적 변혁의 길을 걸을 때, 남북관계의 현실에 대한 민중적 개입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평화공존을 통해 분단폭력을 제거함으로써 남북 공히 통일 과정에 대한 시민의 개입 여지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발상이다. 임지현, “다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p. 200.

있는 기반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역으로 통일지향성은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을 촉진하는 동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과제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문화에 기초한 민족주의적 정체성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할 현실적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시민 의식이나 보편적 평화 규범 확산이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이 확보될 수는 없다. 이러한 규범들은 남북관계를 넘어 모든 국가간, 민족간에 적용되어야만 하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귀속성, 민족주의적 정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지향성이 평화 구축을 촉진하고, 평화공존 과정을 통해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선순환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평화공존론의 입장에서는 통일지향성을 왜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통일을 그저 열린 가능성이거나 내용 없는 지향점으로 설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장기간의 남북 평화공존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 역시 가능할 것이다.

먼저 남북의 미래와 관련하여 통일지향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남과 북이 하나의 국민(민족)국가(nation state)로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과 북이 이렇게 하나의 국가로의 통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는 민족사적 공통성과 그로 인한 남북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남과 북이 그저 인접한 이웃국가로만 머물거나 유럽연합과 같

은 국가연합 상태로 머물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⁰⁵ 통일국가의 성격을 일정 부분 개선되고 변형된 형태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어디까지나 여전히 국민국가 형태의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구화의 미래와 관련하여 국민국가의 소멸과 세계국가의 등장이나 네트워크 국가의 등장으로 인한 통일 필요성의 소멸 등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적어도 근미래에 일어날 사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¹⁰⁶ 현재의 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국가의 소멸보다는 다소 변형된 형태라고 하더라도 국민국가의 지속을 전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¹⁰⁷

이와 더불어 통일지향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앞서 평화공존론의 한계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유들 역시 존재한다. 먼저 향후 격화되는 미중 대결 상황이 남북에 미칠 원심력에 대응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심화와 우호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도 민족주의적 통일에 대한 열망은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급속한 발전과 교류협력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민족주의적 통일 열망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열정으로 표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105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p. 383.

106 국제정치의 네트워크화와 국민국가 통일론 사이의 관계를 다룬 글로는 전재성,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일과 평화』 1권 1호 (2009) p. 100 참조. 관련하여 그가 던진 문제는 다음과 같다. “만약 국제정치의 변화가 탈근대 이행으로 나타난다면, 그리하여 기본 단위의 속성이 배타적 주권성에서 공유주권성, 혹은 다차원적 주권성으로 옮겨간다면, 기존의 근대적 주권국가 지향의 통일론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것이다.”

107 이와 관련하여서는 한승완, 『유럽내 우익민족주의 확산동향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연구보고서 18-3, p. 29 이하 참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통일국가의 형태에 대한 논의는 미래의 선택지로 열어두면서도 남북의 통일지향성을 유지하고 이를 한반도 평화 구축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통일을 개방적이고 열린 과정으로 설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을 동시에 통일에 이르는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이 진전하여 평화협정 체결이 가시화 될 경우 남북관계 설정 방식과 관련하여 다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평화협정 체결 시 통일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까지는 불필요하겠지만, 위의 논의를 참조할 때 ‘통일지향성’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예상되는 동북아 질서 재편과 통일 논의 과정에서 ‘남북한의 주도성’, 즉 ‘민족의 자기결정권’을 선언한다는 점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민족사적 지상과제로 규정해온 북한의 기존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통일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VI

결론

한반도 평화는 장기간 고착된 남북 분단질서를 해제하고 새로운 한반도 질서의 구축을 모색하는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평화 담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현가능성을 정교하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햇볕정책 등장 이후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는 그간 안보포기, 인권침묵, 통일방기라는 근본적인 세 가지 비판들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안보, 인권, 통일이라는 가치가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근본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 담론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 가치들, 즉 안보, 인권, 통일이라는 가치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는 보다 안전하고, 더 나은 인권을 누리며, 나아가서는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II장에서 한반도 평화 개념의 성격과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한반도 평화 개념이 기존의 분단질서 타파를 요구하는 비판적, 당위적 개념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후 논의 전개를 위하여 국가와 국가 사이의 소극적(negative) 평화를 ‘전쟁 및 전쟁 발발 가능성의 부재’로, 적극적(positive) 평화를 ‘국가 및 시민들 사이의 우호와 협력 관계’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는 이후 논의를 위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상호의존성, 양자의 선순환적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념적 토대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남과 북 사이의 적극적 평화, 즉 우호와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소극적 평화, 즉 당면한 안보위협의 해소가 전제되어야만 하며, 이를 통해 남과 북의 우호와 협력관계가 발전할수록 다시 소극적 평화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사이의 이러한 상호의존성과 선순환적 발전 가능성은 이하에서 안보와 평화, 인권과 평화, 통일과 평화를 하나의 발전적 과정으로 접근할 있는 개념적 토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상호의존적이고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모델로 삼아서 안보와 평화, 인권과 평화, 통일과 평화의 선순환적 발전 과정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장에서는 안보와 평화 담론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핵심 과제는 기존의 현실주의 안보 담론에 내재한 고유한 이분법, 즉 힘의 우위를 통한 안보냐 아니면 패배주의, 유화정책이냐 하는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논리적 선택지가 가능한데, 기존 평화 담론들은 주로 1. 안보 담론을 평화 담론으로 대체하는 전략(평화국가론), 2. 안보와 평화의 동일화 전략(안보평화론)을 압목적으로 채택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먼저 1. 남한의 선군축이나 평화국가로의 선제적 전환을 요구하는 평화국가론의 경우는 북핵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의 논리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 안보와 평화를 동일화하는 안보평화론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동일화와 낮은 수준의 동일화가 각각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먼저, 각각 평화와 안보를 적극적 평화와 인간 안보의 수준으로 높이 설정한 후 안보와 평화 개념을 동일화시킬 경우에는 북한민주화론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위한 북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원치 않는 남북 사이의 갈등과 대결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소극적 평화와 전통 안보 수준에서 동일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한반도 평

화 구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평화 동력 확보 및 상호 정체성 변화 과정,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통일지향성 문제 등을 고려하는 데서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때문에 본 연구는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담론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안보-안보 교환을 통한 상호 안보위협 해소, 즉 소극적 평화 구축이 시급한 과제지만, 이러한 과제는 동시에 남북 사이의 우호와 협력 관계 발전, 즉 적극적 평화 구축 과정과의 선순환적 발전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이 비대칭적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보 취약성이 동시에 해소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IV장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둘러싼 인권 우선론과 평화 우선론 사이의 논쟁 지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북한인권 개선을 진정한 혹은 유의미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인권 우선론은 그간 북한인권 상황의 열악함을 대내외에 알리고 북한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이슈화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민주화론의 경우처럼 북한인권 개선을 한반도 평화의 선결조건으로 강하게 내세우는 경우, 인권 우선론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남북 사이의 접촉면을 축소시키고 원치 않는 남북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수세적으로 대응해 오던 평화우선론은 평화권 개념 도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평화만이 북한인권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으

로 이에 맞서왔다.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북한인권 개선의 조건으로서 평화의 의미 등을 부각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지만, 한반도 평화가 북한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평화 우선론이 가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남북 사이의 접촉면 확대를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적극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V장에서는 기존 평화통일론의 전개 과정과 이에 대한 성찰 속에서 통일이라는 목적 자체를 소거하고 이를 평화공존으로 대체하자는 최근 입론들의 핵심 주장을 검토하였다. 평화공존론은 기존의 성급한 통일론이 가지는 위험성을 성찰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지만, 현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목적 자체를 소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지향성 자체를 소거하고 남북 양국의 영구적 공존을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은 남북관계의 역사적 특수성, 향후 미중대결 심화가 한반도에 미칠 원심력, 민족주의와 국민국가의 미래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통일지향성 자체는 유지하면서 남북의 장기적인 평화공존과 이러한 공존을 통한 남과 북 내부의 변화 여지를 개방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은 이러한 접근을 위해 여전히 유효한 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해방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남북 분단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그런 만큼 이는 새로운 상상에 기초한 담론과 실천을 요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물론 한반도 평화 구상은 결코 새로운 구상만은 아니다. 이미 지난 정부들도 시장평화, 민주평화 등의 이론적 구상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질서

구축 내지는 우리주도의 통일 구상을 시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평화, 안보, 인권, 통일 등의 가치를 둘러싼 많은 논쟁과 대결이 진행되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기존 질서의 대체는 항상 새로운 상상은 물론 이를 감당할 정치적 주체의 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새로운 상상에 기초한 담론과 실천, 정치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담론 투쟁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에 기초한 평화 담론의 지속적 확산과 이를 통한 우리 내부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역시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단 질서가 구축해 온 힘의 우위를 통한 안보, 힘의 우위를 통한 우리주도 통일의 길에 대한 비판적 성찰 속에서 새로운 상상을 통해서 공존을 통한 평화, 평화를 통한 인권, 평화를 통한 통일의 길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보다 정교화 되어야만 할 것이다.

Abstract

Issues and Tasks in the discours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Woen Sick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urther refine the existing peace discourse and enhance its persuasiveness by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ours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curity,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discourse. Since the advent of the Sunshine Policy, fundamental criticism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on the ide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appeasement policy that weakens our security, avoidance and silence of North Korea's poor human rights conditions, and division management that gave up unification.

It is inevitable that the discours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seeks to dismantle the existing division order and establish a new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s with the existing order and existing discourse. At

the same time,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values such as security,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are still important values that we cannot give up. Given this, in order for future discours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 expand its legitimacy and persuasion, it is necessary to internalize the values of security,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more actively beyond the existing dichotomous confrontations of peace and security, peace and human rights, and peace and unificat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ways for the values of peace, security,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to enter into a virtuous circle beyond the existing dichotomous confrontation under the heading of “a virtuous cycle of security and peace,” “change through access,” and “unification as a process.”

First of all, “the virtuous cycle of security and peace” emphasizes the need to seek a virtuous circle of security and peace through mutual cooperation beyond the limits of the existing idea of security through the superiority of power. Next, “change through acces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xpanding contacts with North Korea through peace and gradual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human rights-first discourse. Finally, “unification as a process”

suggests that unification should be set as a long-term task and an open process on the premise of maintaining the unification orientation after review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unification discourse and the inter-Korean peaceful coexistence discourse, which is proposed as new alternatives.

Keyword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human rights, unification

참고문헌

구갑우. “비판적 국제이론과 한반도의 평화과정-대안적 연구의제의 설정.”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시민과 세계』 10호 (2007).

----- “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평화-안보 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3호, 통권 62호 (2008).

권숙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남갈등의 이해」. 『사회과학연구』 제28집 1호 (2012).

김동춘.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경제와 사회』 통권 제89호 (2011).

김상준. “분단체제와 양국체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 “코리아 양국체제 한 민족 두 나라 공존을 통해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 『한국사회학』 52권 4호 (2018).

김원식. “북한인권 담론의 규범적 논거들에 대한 검토: UN의 개입에 관한 국내 시민 사회 담론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1호 (2006).

----- “근대적 자유 개념의 재구성: 다차원적 사회비판의 이념을 위하여.” 『사회와 철학』 27호 (2014).

----- 『하버마스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5.

----- 「보편적정례검토의 북한인권 개선 효과 평가 및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통권 79호 (2020).

나중석. 『대동민주 유학과 21세기 실학』. 서울: 도서출판b, 2017.

낸시 프레이저 저. 김원식 역. 『지구화 시대의 정의』. 서울: 그린비, 2011.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 저. 김원식·문성훈 역. 『분배나 인정이냐』. 서울: 사월의책, 2014.

모춘흥·최진우.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유럽연합(EU)의 對북한 인권정책.” 『통일연구』 제22권 1호 (2018).

문성훈. “폭력 개념의 인정이론적 재구성.” 『사회와철학』 20호 (2010).

미세린 이사이 저.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 서울: 길, 2005.

민병원. “안보 담론과 국제정치, 안보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20권 2호 (2012).

박길성. 「한국사회의 갈등지형과 경향」. 『한국사회』 제9집 (2008).

박세일. “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선진화포용 통일론.” 화해상생마당 주최.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2009. 9. 29)」 발표문.

박형중.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 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 (2013).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8.

서보혁. 『코리아 인권』. 서울: 책세상, 2011.

----- “국제 평화권 논의의 추세와 함의.”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권 1호 (2012).

----- “진보진영은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창작과 비평』 제2권 1호 (2014).

----- “한국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2호, 통권89호 (2015).

----- “통일문제의 평화학적 재구성,” 『한국민족문화』 제63호 (2017).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7 통일의식조사』 (2018). 『2018 통일의식조사』 (2019).

신범식. “다자 안보 협력 체제의 이해: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과 현실.” 『국제관계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 제28호 (2010).

신진옥.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제89호 (2011).

아이리스 매리언 영 저. 김도균·조국 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서울: 모티브북, 2017.

악셀 호네트 저. 이현재·문성훈 역. 『인정투쟁』. 서울: 사월의책, 2011.

알렉산더 웬트 저. 박건영 외 역.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09.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엮음.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서울: 사월의책, 2012.

오영달. “남북한 정치체제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 칸트의 공화주의적 평화론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7권 2호 (2016).

외교부. 『2019 외교백서』. 2020.

우승지. “북한 인권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6권 3호 (2006).

위르겐 하버마스 저. 강영계 역. 『인식과 관심』. 서울: 고려원, 1996.

_____.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서울: 나남, 2004.

_____. 장춘익 역. 『의사소통행위이론』 1, 2. 서울: 나남출판, 2006.

유재건. 「남한의 평화국가 만들기는 가능한 의제인가.」. *창비주간논평* (206. 8. 22)

윤평중. “국가이성론으로 본 ‘북한문제’와 통일-21세기 한국 정치철학의 과제.” 『철학과 현실』 통권 제96호 (2013).

윤홍식. “반공개발국가를 넘어서 평화복지국가로: 역사와 전망.” 『시민과 세계』 27 (2015).

이남주. “분단체제 하에서의 평화 담론, 평화국가의 가능성과 경로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87호 (2013).

_____. “분단 해소인가, 분단체제 극복인가.” 『창작과 비평』 46권 1호 (2018).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 철학』 제21권 2호 (2010).

_____. “통일과 평화의 길항관계.” 『시대와 철학』 제26권 1호 (2015).

_____. “한반도 통일과 인권의 층위.” 『시대와 철학』 제29권 1호, 통권 82호(2018).

이사야 벌린 저. 박동천 역. 『자유론』. 서울: 아카넷, 2006.

이상근.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와 실현조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연구보고서 18-11.

이일영. “양국체제인가, 한반도체제인가.” 『동향과 전망』 통권 102호 (2018).

임마뉴엘 칸트 저. 이한구 역.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서울: 서광사, 1992.

임수환. “한국사회의 통일담론과 평화통일전략.” 『평화학연구』 제8권 제1호 (2007).

임재성.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권: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91호 (2011).

임지현. “다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창작과 비평』 제30권 3호 (2002).

장은주.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북한 인권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철학적 토대의 모색과 관련하여.” 『사회와철학』 17호 (2009).

전성훈. “비핵화외교의 실패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전략연구』 제26권 2호, 통권 제 78호 (2019).

전재성.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일과 평화』 1권 1호 (2009).

정경환·신왕철.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2권 4호 (2012).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북한연구학회보』 제 14권 제2호 (2010).

존 미어샤이머 저. 이춘근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나남, 2004.

최선경·이우영. “‘조선민족’ 개념의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제1호 (2017).

최장집 인터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 『시사IN』 제558호 (2018).

테오도르 아도르노·막스 호르크하이머 저.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토마스 홉스 저. 최공웅·최진원 역. 『리바이어던』. 서울: 동서문화사, 2009.

한승완. “한국 국민정체성의 ‘민주적 반추’와 통일 문제.” 『사회와 철학』 제22집 (2011).

한승완. 『유럽내 우익민족주의 확산동향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연구보고서 18-3.

허버트 마르크제 저. 김현일 역. 『이성과 혁명』. 서울: 중원문화, 2017.

황장엽. 『황장엽의 대전략』. 서울: 월간조선사, 2003.

황지환. “한반도평화체제 구상의 이론과 현실.” 『평화학연구』 제17권 1호 (2009).

M. 호르크하이머 저. 박구용 역. 『도구적 이성 비판』. 서울: 문예출판사, 2006.

- Bull, Hedley. "Hobbes and the International Anarchy." *Social Research*, Vol. 48, No. 4, Politics: The Work of Hans Morgenthau (winter 1981).
- Bush, George W. "Remarks by President George W. Bush at the 2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https://www.ned.org/remarks-by-president-george-w-bush-at-the-20th-anniversary/>
- Doyle, Michael.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2, No. 3 (Summer 1983).
- Galtung, Johan. An Editorial.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1. No.1 (1964).
- Gleditsch, Nils Petter., Nordkvelle, Jonas. and Strand, Havard. "Peace Research - Just the Study of War?"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1, No. 2, Anniversary Special Issue (March 2014).
- Patomäki, Heikki. "The Challenge of Critical Theories: Peace Research at the Start of the New Centur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8, No. 6 (November 2001).

INSS 연구보고서 2020-5

한반도 평화 담론의 쟁점과 과제

| | |
|-------------|---|
| 발행처 |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 발행인 | 김기정 |
| 주소 |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
| 전화 | 02-6191-1000 (Fax. 02-6191-1111) |
| 홈페이지 | http://www.inss.re.kr |
| 인쇄일 | 2020년 12월 |
| 발행일 | 2020년 12월 |
| 편집 |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
| ISBN | 979-11-89781-30-9(94340) 979-11-89781-03-3(전18권) |
| 가격 | 비매품 |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